

관세연구 19-01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 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2019. 10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 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2019. 10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박 지 우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TRQ 관련 규정, 관리방식 및 동향	11
1. TRQ 관련 규정	11
2. WTO의 TRQ 관리방식 비교	16
3. WTO DDA 협상 동향	21
III.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WTO TRQ) 운영 현황	33
1. WTO TRQ 적용관세 및 수입실적 현황	34
2.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이행률 현황	37
3. 물량관리방식	47
IV. FTA TRQ 물량 운영 현황	54
1. FTA TRQ 운영 현황	54
2. 주요국과의 FTA TRQ 운영 현황	63
가. 한-미 FTA TRQ 운영 현황	63
나. 한-EU FTA TRQ 운영 현황	67
다. 한-중 FTA TRQ 운영 현황	71
V. TRQ 수입관리의 국제 현황	73
1. 국제적인 TRQ 현황 및 TRQ 관리방식 현황	73
2. TRQ 수입이행률 현황	80

VI. 요약 및 결론	87
1. TRQ 관리 투명성 제고	87
2.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	88
3. 일부 품목의 TRQ 설정 및 증량 제외	89
4. WTO TRQ와 FTA TRQ의 상호보완성 고려	91
참고문헌	93
부록	95
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95
2.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109

표 목차

〈표 II-1〉 WTO의 TRQ 관리방식 장단점 비교	20
〈표 II-2〉 TRQ 관련 농산물 수출 및 수입국의 기본입장 비교	25
〈표 II-3〉 TRQ 관리: 각료결정(15개 조문과 2개 부속서)	27
〈표 II-4〉 TRQ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단계	31
〈표 III-1〉 현행 시장접근물량 운영품목 현황(2019)	34
〈표 III-2〉 WTO TRQ 증량 현황(2016~2018)	39
〈표 III-3〉 시장접근물량설정품목 이행률 현황(2010~2015)	44
〈표 III-4〉 우리나라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방식 비교(2014, 2017~2019) ...	52
〈표 IV-1〉 WTO TRQ 및 3개국 FTA TRQ 중복품목 비교	55
〈표 IV-2〉 2019년 기준 증량품목(15개)에 대한 세율 분석(FTA 세율 및 철폐기간 등 반영) ..	57
〈표 IV-3〉 한-미 FTA TRQ 품목 적용세율 및 증량 현황(2016~2018)	64
〈표 IV-4〉 한-EU FTA TRQ 품목 적용세율 및 증량 현황(2016~2018)	68
〈표 IV-5〉 한-중국 FTA TRQ 품목 적용세율 및 증량 현황(2016~2018)	72
〈표 V-1〉 WTO 회원국의 연도별 TRQ 품목 수 현황	73
〈표 V-2〉 WTO에서 규정하는(통보된) 관리방식 현황	77
〈표 V-3〉 TRQ 물량 수입을 위한 부가조건의 요구 현황	79
〈표 V-4〉 TRQ 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 비교	81
〈표 V-5〉 2007~2015년 기준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 비교	82
〈표 V-6〉 2015년 기준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별 품목 수	85

그림 목차

[그림 III-1] TRQ 품목의 수입이행률 분포(2015)	43
---	----

I. 서론

- TRQ(Tariff Rate Quota)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됨¹⁾
 - 수입쿼터제는 일정 물량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나 TRQ의 경우 수입자체가 금지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무역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 WTO 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관리제도의 주요 논의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발생한 TRQ에 대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²⁾
 - 그러나 현저히 낮은 세율 적용이 보장된 TRQ 물량이 수입되면서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매우 큰 수입 차액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이 수입차액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TRQ 수입이 해당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 TRQ 미소진 메커니즘 도입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TRQ 관리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협상안을 발리패키지라고 명명하였음³⁾

1) TRQ(Tariff Rate Quota)는 저율관세쿼터제도, 시장접근물량, WTO TRQ, 저율할당관세물량, 저율관세할당, 저율관세제도 등의 용어로 혼용하고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WTO TRQ를 연구범위로 정함. 저율관세할당(TRQ)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모두 적용되지만 농산물 TRQ는 WTO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수산물은 GATT(일반 상품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적용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

3) 농림축산 식품부,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3. 12, p. 3.

- 본 합의는 12년간 합의 도출에 실패해오던 DDA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TRQ 관리는 2012년 9월 G20⁴⁾이 제안했던 의제였으며 특히 농산물에 설정된 쿼터가 낮은 세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 정해진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미소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제안된 내용이었음
- 발리패키지에 따르면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경우 관리방식의 변경을 요청받을 시 기존의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혹은 제시된 비 조건적 허가방식 혹은 선착순 방식 이외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선진국은 TRQ 관리는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도국 우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열렸던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도 본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TRQ 제도는 UR 이후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입차액을 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WTO 협정 내용 및 품목별 특징에 따라 지정기관 배정방식, 수입권 공매, 추천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⁵⁾
- 또한 FTA 체결에 따라 한-미, 한-EU FTA, 한-중 FTA 등의 협상에서 새로운 TRQ가 만들어졌음⁶⁾
 - FTA/TRQ는 관리대상 품목, 적용세율, 관리방식 등에 있어 WTO/TRQ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그러나 FTA/TRQ와 WTO/TRQ 대상 품목이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있음

4)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임

5) 임정빈, 『우리나라 관세할당(TRQ)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2007, p. 1.

6) 임정빈, 『우리나라 관세할당(TRQ)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2007, p. 1.

- 이렇듯 관련 규율 강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의 차이, FTA에 따른 TRQ와 WTO의 TRQ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TRQ 운영 시 실익없는 품목의 존재 등에 대해 향후 정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개도국으로써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WTO의 체제는 시장지향적인 무역 질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TRQ 관련 규정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율 강화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미국이 WTO에 개도국 지위가 불필요한 국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개도국 지위축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 전체에 해당되어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
 - G20에 해당하는 회원국
 -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류에 따른 고소득 국가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 FTA 협정과 WTO TRQ 대상 품목의 차이는 TRQ 관리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따를 수 있음
 - 특히 TRQ 이행률이 낮은 품목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TRQ 이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TRQ 관련 제도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TRQ와 관련한 대외 및 대내적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 및 이행실적, WTO 보고서에 따른 회원국의 TRQ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는 TRQ와 관련된 주요 규정, WTO에 보고된 각국의 TRQ 관리방식과 각 방식별 장단점, 발리패키지 및 기타 허드슨 초안 등 TRQ와 관련한 주요 동향 등에 대해 조사함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WTO TRQ의 품목, 증량, 이행률, 관리방식 등을 포함한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FTA인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TRQ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함
- 제Ⅴ장에서는 WTO에 보고된 각국의 TRQ 현황을 TRQ 적용품목, TRQ 관리 방식 현황, TRQ 부가조건 적용 현황, TRQ 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 제Ⅵ장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함

II. TRQ 관련 규정, 관리방식 및 동향

1. TRQ 관련 규정

- UR 농업협상 타결에 따른 합의에 의해 농산물 수입국 및 수출국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모든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었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적인 조치로 전환되었음
- 특히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할 시 이중관세제도인 TRQ(Tariff Rate Quota: 이하 TRQ)를 통하여 양허된 물량에 대해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UR 협정문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Re.1)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
 - UR 협상에 따라 수출국의 경우 낮은 세율로 일정량에 대해 시장접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짐
 - 비관세 장벽이 관세화되어 야기될 수 있었던 과도한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국 농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한 수출입국 간 타협 산물로 볼 수 있음⁸⁾
- TRQ와 관련된 UR 농업협정문상의 공식적인 규정은 없으며 TRQ 관리방식에 대

7)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0, 검색일자: 2019. 7. 8.

8)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mafra/430/subview.do>, 검색일자: 2019. 7. 8.

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GATT 또는 WTO 조항 또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GATT 제13조가 TRQ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GATT 제13조는 수량제한조치의 관리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쿼터 밖 관세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시장조건하에서 TRQ 초과수입이 어려울 시 TRQ 제도가 쿼터 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수량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GATT 제13조가 가장 관련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GATT 제13조는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항은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금지, 제2항은 수량제한의 무역량 분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GATT 제13조에 따라 허용된 수입의 총량을 나타내는 쿼터(공급국 간에 할당되었는지 여부 불문)가 확정되어야 하며, 동 총량은 공고되어야 함
 - 쿼터의 운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 또는 공급원으로부터의 당해 상품의 수입을 위하여 수입면허 또는 수입허가가 이용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공급국 간 쿼터가 배분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계약당사자는 당해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모든 계약당사자와 쿼터 몫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약당사자에게 몫을 배분하되 동 상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공급된 비율에 기초한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동 쿼터가 관련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함

□ GATT 제13조에 따라서 TRQ 관리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시 기준은 쿼터 소진(quota fill) 및 무역배분(distribution)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⁹⁾

9)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p. 23~26.

- 쿼터소진은 시장이 허락할 시 쿼터 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쿼터 또는 TRQ의 100% 소진 여부와 쿼터 또는 TRQ가 100% 소진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허용되는 시장 조건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게 됨
 - 허용되는 시장 조건의 경우 쿼터 또는 TRQ가 100% 소진되지 않을 시 적절한 상업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함
 - 쿼터 미소진의 적법한 이유의 가장 좋은 예시는 국내 생산이 갑자기 급증하여 초과수요가 줄어든 경우이며 이 시기에 국내 가격이 국제시장의 가격에 쿼터 내 관세를 적용한 수준보다 낮아졌을 시 TRQ 물량보다 적은 양이 수입되게 됨
 - 따라서 TRQ 이행률은 100% 미만으로 낮아지나 수입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적절한 이유가 발생하므로 합법적인 미소진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WTO에서는 관행적으로 실제 국내 가격 및 수입가격(국제시장가격+쿼터 내 관세)을 비교함
 - 국내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 TRQ 미소진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내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은 데에도 TRQ가 미소진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야 함
 - 또한 관세 외 적법한 거래비용 수반으로 TRQ가 미소진되거나 혹은 소비 차별화에 따라 가격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 또한 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TRQ 관리 방법이 정상적인 수입을 어렵게 하여 TRQ의 미소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TRQ 관리제도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됨
 - 단 국내 생산이 증가한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지, 국내 정책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움
 - 쿼터소진율로 TRQ 관리방식의 적정성을 파악 시 TRQ의 관리방식이 각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예로 국영 무역 또는 과거 실적에 따른 TRQ 관리방식의 쿼터 소진율이 공매 방식 혹은 실행세율에 따른 관리방식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 수입관리 필요성이 크므로 국영무역이나 생산자

단체에 의한 수입관리가 선호되어 보다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
 - 반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시장 지향적 방법으로 TRQ가 관리되며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시 쿼터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됨

- 무역배분은 쿼터하에서 무역 왜곡의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입국 시장 배분이 쿼터가 없었을 시 수출국에서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수입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에 가능한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무역배분은 어떤 TRQ 관리법에 따라 미소진이 이루어질지와 어떤 배분방식이 수출국 간 시장점유율에서 무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
 - GATT의 무차별성 원칙에 따르면 무역 비중이 차별적 기준이 아니라 수출국의 상대적인 효율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 무역배분의 경제적 원칙은 TRQ에서 가능한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어떠한 TRQ 관리방법이 미소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가장 큰지 및 어떤 TRQ 배분이 수출국 간 시장점유율에서 무차별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여부에 대해 판정함
 - GATT 규정에서 또한 수출 공급 국가 간의 상대적 효율성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기타 TRQ 관련 규정으로 2003년 7월 제정된 하빈슨 초안이 있으며 하빈슨 초안은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TRQ와 관련된 주요 논의점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음
 - 하빈슨 초안에서는 TRQ 설정에 따라 시장접근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TRQ에 따른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9가지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¹⁰⁾
 - TRQ 약속의 관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10)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2.

II. TRQ 관련 규정, 관리방식 및 동향 15

- TRQ 수입 시 국내산을 구매할 것과 혹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 TRQ 수입 시 계절에 따른 수입을 제한하지 말 것
- TRQ 수입 시 특정한 제품 혹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지 말아야 하며 최종 소비를 위한 수입을 제한하지 말 것
- 수입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상업적 방식으로 TRQ가 관리되지 말 것
-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 수출 공급국에서의 TRQ 수입만 TRQ 약속에 따른 수입으로 승인하도록 함
- TRQ 수입 시 수출이나 재수출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지 말 것
- 수입업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 것
- TRQ 수입과 관련해서 GATT 1994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부과금이나 예치금 기타 재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말 것

- 하빈슨 초안에서는 위 본문에서 제시된 일반요건뿐 아니라 수입허가 필요 유무에 따라 TRQ의 관리방식을 분류하여 특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¹¹⁾
 - 수입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TRQ의 경우 연초부터 제공되어야 하며 쿼터 내 관세의 적용 기회가 유보될 시 사전에 적당한 기간을 두고 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수입허가가 필요한 TRQ의 경우 연초에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도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출 공급국을 위해 사전에 일찍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소매판매 혹은 다른 최종용도사용을 위한 실제 수요자의 TRQ 수입권 제한을 금지함
 - TRQ 수입권의 경우 8개월 간 유효하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허가없이 수입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미소진된 TRQ를 당해연도에 수입 가능하도록 재할당하도록 함
 - TRQ에 대해 국별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국가에 할당된 물량이 소진되지

11)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2.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소진 또는 잔여분에 대해 특정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에 재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빈슨 초안에서는 또한 수입국영무역에 대해 TRQ 관련 국영 무역기업의 관리 및 운용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을 WTO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제 17조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¹²⁾
- 회원국은 국영무역이 GATT 제17조(WTO자체의 국영무역 조항) 및 GATT 1994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것을 보장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 권리 혹은 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비 정부 수입 국영 기업, 실제 권한을 행사하여 구매 및 판매행위로 수입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업 및 행위 모두 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
- 국영무역기업은 시장접근양허 및 「농업협정문」 제4조 제2항의 조치에 대한 혜택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없음
- 국영무역기업을 설립 혹은 유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국은 해당 기업의 관리나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정해진 양식대로 농업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 국영무역기업은 개도국 식량안보, 생계에 대한 안전, 농촌의 발전 등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본 목적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우대조치를 실행하도록 함

2. WTO의 TRQ 관리방식 비교¹³⁾

- WTO에서는 각국에서 제출하는 시장접근 이행계획서에 따라 현재 9가지 방식으로 TRQ 관리방식을 구별하고 있음
 - TRQ 품목 설정으로 시장접근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WTO 회원국은 각국의 관세할당 유지 및 운영에 대해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 기타(Other)를 제외한 TRQ 운영의 9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음

12)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6.

13)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p. 33~36.

- 단일 세율에 의한 관리(Applied Tariff)
- 선착순 배정방식(First-come First-served)
- 수입허가제도(License on demand)
- 과거수입실적에 따른 배분(Historical Importers)
- 공매방식(Auctioning)
- 국영무역방식(Imports Undertaken by State Trading entities)
- 혼합방식(Mixed Allocation Methods)
- 생산자단체에 의한 운영(Producer Groups or Association)
- 불특정 방법(Non-specified Methods)

- 단 구체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TRQ를 설정한 품목이 있는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단일세율에 의한 관리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량이 TRQ 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관없이 쿼터 내 관세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TRQ 제도 운영이 큰 효과가 없음
 - 단일세율에 의한 관리방식하에서 TRQ가 미소진될 가능성은 낮으며 수출국 간 시장 점유율 배분을 고려했을 시에도 무차별적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TRQ 관리방식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음
 - 그러나 TRQ 운영에 크게 효과가 없는 본 방식을 통보한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관세 할당품목으로 설정된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 다른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 것일 뿐 다른 수입관리방식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방식은 TRQ에 대한 수입권을 지난 교역실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할당하는 배분방식을 의미함¹⁴⁾

14)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44.

- 단기적으로 수출국 및 수입국(업체) 간 일정하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신규 수출국 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선착순 배정방식은 TRQ 물량 이내의 수입물량이 수입지에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수입통관 시 쿼터 내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의 수입물량에 대해 쿼터 밖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임¹⁵⁾
- 선착순 제도의 경우 수입의 수요가 결정되어 있는 TRQ 초과 시 수입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초단기적 수입급증의 가능성이 있어 시장교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수입자의 경우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적용될지 혹은 높은 관세가 적용될지 불분명하여 위험부담이 높아짐
 - 시장에 대한 예측 및 안정성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 통관 혹은 관세 평가 절차가 잘 정비되었을 시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행정 절차가 단순화될 수 있음)
 - 수입이행률이 낮을 지라도 수출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낮은 방식임
- 수입허가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사전적인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임¹⁶⁾
- 수입요구량이 TRQ를 초과하지 않을 시 요구된 물량을 줄여 수입요구량과 TRQ를 일치시키고자 함
 - 만약 수입권에 대한 수요가 시장접근물량보다 적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착순 제도로 작동됨
 - 용도 제한이 적용될 시 수출국에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
 - 다른 방식과 비교하였을 시 보다 수입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2003. 3, p. 146.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2003. 3, p. 145.

수입허가권 발급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왜곡을 일으킬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

- 공매방식은 경쟁 입찰에 따라 TRQ 내의 수입권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TRQ 수입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을 정부가 다시 회수할 수 있음¹⁷⁾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이 관리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시장 개방을 미리 대비하여 민간시장의 적응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국고수익이 발생하는 이점이 있음
 - 단 수입자가 수입물량 배정을 위해 비생산적인 이윤추구행동을 발생시킨다면 거래비용이 증가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음
 - 대기업이 수입을 독점할 경우 유통질서가 혼란될 수 있으며 유사 시 식량안보 기능 및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기능은 미흡할 수 있음

- 국영무역방식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한 국영무역기업이 TRQ를 수입 및 관리하는 방식임¹⁸⁾
 - 수입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가격 안정화, 수입차액 회수로 정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임
 - 비상 시 식량안보, 투명한 유통경로, 안정적인 국고수익, 국내 농업의 보호 등의 이점이 있음
 - 그러나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투명성, 생산자 보호의 문제, 상업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수입으로 인한 폐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수입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수출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 과잉 생산될 시 수입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2003. 3, p. 146.

18) 임정빈,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p. 22.

- 생산자단체에 의한 운영방식은 수입권이 관련 생산자, 유통업자를 대표하는 단체, 가공업자 등에 부여된 것이며 시장 개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식임¹⁹⁾
 - 수출국의 주장에 부합한 제도이며 수입이행물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입량, 수입품종, 시기 등이 수입단체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시장접근 기회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추천단체에 수입권을 배분할 시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식량안보 및 국내농업 보호 기능이 미약함
- 혼합방식은 위의 TRQ 관리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불특정적인 방식은 현재까지 특정(notified)된 행정적 방식(Administration method)이 아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기타의 경우 WTO TRQ의 9가지 규정방식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clearly fall within any other category) 방식을 의미함

〈표 II-1〉 WTO의 TRQ 관리방식 장단점 비교

관리방식	장점	단점
단일세율	- 공정성 및 투명성 - TRQ 미소진 가능성 낮음	- TRQ 제도 운영 효과 미흡
과거수입실적 배분	- 수출입국 간 안정적인 관계 유지	- 경쟁력 있는 신규 업체 시장진입 방해
선착순 배정	- 행정절차가 비교적 단순 - 통관이나 관세평가 절차의 정비가 확실한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 - 수입이행물이 낮을 시에도 수출국의 이익제기 소지 가능성이 낮음	- 쿼터 내 물량보다 수입수요가 과다할 경우 수입자 간 경쟁 심화 및 초단기적 수입급증 가능성 - 수입 시 쿼터 내일지 여부의 분명으로 인하여 수입자의 경우 위험성이 있음

19) 임정빈,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p. 22.

〈표 II-1〉의 계속

관리방식	장점	단점
수입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량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입 물량의 조절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제한이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이의제기 가능성 - 공정 경쟁 방해 - 수입허가 발급 시 정부 개입으로 시장왜곡 발생 가능
공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향적이므로 투명성, 효율성이 높음 - 국가의 수익이 발생함 - 민간시장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적응력이 제고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생산적 행동으로 거래비용 증대 가능 - 대기업의 수입독점으로 유통질서 혼란 발생 가능 - 식량안보 또는 농업보호를 위한 기능이 미흡함
국영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안정 - 정부재원확보 가능 - 식량안보, 투명한 유통, 국내농업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 운영의 투명성확보 문제 - 정치적인 수입수단 - 생산자 보호 어려움 - 수입이행률이 낮을 시 수출국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음 - 국내 과잉 생산 시 수입 이행의 문제 발생
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입는 단체에 대해 보상하는 형평성 추구 - 수출국의 주장에 부합한 제도이며 수입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량, 수입품종, 시기 등이 수입단체를 고려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추천단체에 수입권을 배분할 시 불공정성 상존 - 식량안보 및 국내농업보호 기능이 미약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p. 33~35; 임정빈, 『관세 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p. 22; 보고서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WTO DDA 협상 동향

1) 주요국의 입장

□ 1996년 이후 UR 협상에 따른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TRQ를 통한 수입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음²⁰⁾

- 특히 다양한 TRQ 관리방식이 무역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각국의 이행계획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양허된 의무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WTO DDA 협상을 통하여 TRQ 물량에 대한 수입관리 규율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수출입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타협안을 논의 중에 있음
 - TRQ 관리방식의 경우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되, 수출국들의 입장에서 TRQ 소진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 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TRQ 소진율이 낮을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TRQ 소진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시 보다 시장지향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논의 중임
- 특히 DDA 협상 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케언스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경우 엄격한 관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여 공정성 및 예측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음²¹⁾
 - 미국은 TRQ 소진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했을 시 자동적으로 쿼터 내 관세를 인하하여 TRQ 내 물량 수입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제안하였음
 - 폴란드의 경우 미소진된 쿼터에 대해 쿼터 내 관세를 자동적으로 50%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또한 수입국 최종수요자에 대해 수출국 공급자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것을 주장함
 - 미국의 경우 단일 독점 수입권의 폐지 및 품질이나 수입처 등을 결정할 시 단일한 수입창구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20) 이상현, 정대희, 정수정, 『TPP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2, pp. 92~93.

21)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2.

- ASEAN의 경우 국영무역 기업을 운영할 시 관련 규율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국은 특히 TRQ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부가 조건(독점적인 수입국영무역, 특정 세 번에 대한 물량배정, 국내산 구매조건 연계, 최종사용용도제한, 생산자단체에서의 관리 등)을 철폐할 것을 주장함²²⁾
 - 미국의 경우 최종 양허기준의 20%를 증량할 것을, 케언즈 그룹의 경우 소비량을 기준으로 20% 증량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미국, ASEAN, 멕시코 등에서는 수입국영무역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일의 독점 수입권 폐지 및 품질과 수입처 결정을 위한 단일 수입창구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수입추천 물량, 유효기간제한, 특정국 쿼터분배 등의 부가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은 최종사용용도제한, 국내산 혼합, 국산품구매, 국내 생산의 배분 등과 같은 부가조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ASEAN에서는 국영무역기업 운영을 위한 규율의 엄격화와 TRQ 배분 및 관리의 무차별적인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캐나다와 쿠바, 인도 등의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TRQ 설정 시 HS 4단위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²³⁾
 - HS 6단위 이하에서는 TRQ를 의도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특정 품목의 TRQ가 설정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 총량쿼터 사용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TRQ 물량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효과를 언급하는 것으로 모든 품번별로 TRQ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해당사국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음

22)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2.

23)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2.

- 공매제도와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2조(양허표), 제3조(내국민대우), 제8조(수입 및 수출에 관한 수수료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제도이므로 폐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음²⁴⁾
 - 공매제도의 경우 근본적으로 수입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그 밖에도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미소진 재분배 원칙 마련, 수출국 공급자 간 또는 국내산 및 국외산 간의 무차별 원칙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음

- 일본, 스위스, 한국, 노르웨이, EU 등의 농산물 수입국에서는 TRQ 규율이 각국 시장의 여건과 품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획일화되고 엄격한 규범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음
 - 농산물 수입국에서는 TRQ 규범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공정하며 무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농산물 수입국에서는 UR 이후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라 등장한 TRQ 제도가 농산물 관련 교역을 확대시켰고 수출국의 이익 증가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에 전제하여 각국의 다양한 TRQ 관리방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준수해 오²⁵⁾
 - 대부분 수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수송의 가장 기초단위 이하로 TRQ가 배분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주장함
 - 또한 TRQ 배분 시 단계적으로 분할 배분하는 것은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공매 제도와 관련하여 농산물 수입국에서는 신규 수출입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최혜국 대우원칙에 충실한 제도로 예측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지향적인 제도로써 지

24)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3.

25)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2.

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²⁶⁾

- 쿼터 내 관세율과 쿼터 밖 관세율의 차이가 클 시 보다 경쟁적인 시장을 조성하게 되어 수입차익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함
- 특히 수입차익은 부과금이 아닌 쿼터지대(quota rent)로 배분은 국내적인 문제이며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 II-2〉 TRQ 관련 농산물 수출 및 수입국의 기본입장 비교

국가분류	TRQ 관련 입장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 수출국 (미국, 케인스 그룹²⁷⁾,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에 의한 TRQ 관리 철폐 - TRQ 물량의 확대 (최종 양허기준 20% 증량-미국, 소비량 기준 20% 증량-케인스 그룹) - 공급자 간 및 국산과 수입 산의 무차별 원칙 보장 - TRQ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보장 - 추가적 부가요건 재검토 또는 철폐 (최종사용용도 제한 폐진, 국내산 혼합규정, 국산품 구매조건, 국내 생산자를 통한 분배(국영무역 지정 폐지), 수출조건부 TRQ 배정) - 미소진 TRQ에 대한 방지대책(재분배) 마련 - 공매제도 금지(GATT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의 위반)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 수입국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EU 등 NCT²⁸⁾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이고 신축적인 관리지침의 마련 - TRQ 관련 규범은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무차별원칙 강화에만 국한 - 수입국가의 다양한 국내시장의 상황(수급, 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입관리방식의 다양성 인정 - 공매제도는 최혜국대우에 충실하고, 시장지향적인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p. 50~55 및 보고서 본문의 내용을 재참조하여 작성

26) 농림축산식품부,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7. 7, p. 53.

27)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산물 수출국의 모임으로 뉴질랜드·말레이시아·브라질·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우루과이·인도네시아·칠레·캐나다·콜롬비아·태국·피지·필리핀·헝가리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28) NTC(Non-Trade Concern) 국가는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산품과 달리 농업분야의 시장 개방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수입국을 의미함

2) TRQ 관련 발리패키지 합의

가) 수입허가절차 협정문

- 2013년 9월 1일 신임 WTO 사무총장(Roberto Azevêdo) 취임 이후 DDA 협상이 급진전되어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부 이슈에 대해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를 발리패키지라고 명명함²⁹⁾
 - 2001년 DDA 출범하에 각료회의는 2005년 홍콩 각료 선언, 2008년 7월 패키지 등을 토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각국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DDA 협상의 주제로 TRQ 폐지 및 관세체제(Tariff-only system)의 완성(수출국) 또는 관세감축과 쿼터증량(수입국)의 주장이 대립되어 왔지만 TRQ 유지 쪽으로 양쪽의 주장이 조율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쿼터소진율을 높이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TRQ 수입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수출국가의 시장접근 기회를 확보해줄 것에 대한 내용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발리 패키지에서는 조기수확 대상인 농업분야 일부(TRQ 관리,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일반서비스, 수출경쟁, 면화),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및 개발 이슈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음
 - 조기수확 대상의제는 DDA 모든 의제가 일괄적으로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합의 가능한 분야를 지정한 것을 의미함
- 발리 패키지에서 타결된 TRQ 관리는 2008년 DDA 모델리터 초안(Rev.4)을 발췌한 것으로, TRQ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향후 DDA 협상 재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³⁰⁾

29) 농림축산 식품부,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3. 12, p. 1.

30) 농림축산 식품부,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3. 12, p. 7.

II. TRQ 관련 규정, 관리방식 및 동향 27

- 1995년 UR 타결 시, TRQ 물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TRQ 관리방식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각국 관리방식에 따른 TRQ 소진을 편차가 커지면서 수출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음
- 주요 내용은 본문(총 15개의 조문)과 부속서로 분류될 수 있음
 - 본문은 90일 전 TRQ 입찰 관련 정보 공표, 30~60일 이내에 TRQ 신청의 종료 등 투명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TRQ 물량의 수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체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TRQ가 미소진될 시 해당 기간 안에 다시 배분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A)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본 합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I-3〉 TRQ 관리: 각료결정(15개 조문과 2개 부속서)

조문(제목)	주요 내용	평가
투명성의 강화 (제1조~제12조)	- TRQ 개시 및 신청 등의 공표(최소90일 전, 30~60일 내에 신청 처리) - 불필요한 지연 금지 - 하나의 관리기관 지정 - 경제적인 수량 배분 - WTO 소진을 통보 - 필요 이상의 행정부담 금지 등	- TRQ 관리의 투명성강화로 수입국들의 TRQ 의무 이행 부담 증가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허가 관련 고시 개선 필요성 증대
미소진 메카니즘 (부속서 A)	- 수입국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일 경우 수입국은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이 없음
미소진 메카니즘 재검토 (제13조~제15조)	-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카니즘의 개도국 S&D 유지 여부 등 결정 - 미 합의 시 적용 유보 선진국 적용 제외	- 개도국 S&D 수정 여부 관련 미국과 중국 등의 대립을 감안,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제시, 합의 도출
미소진 메카니즘 유보 선진국 (부속서 B)	-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 시, 목록에 등재된 선진국들은 적용 유보 여부 결정 가능	- 미국, 바베이도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 등 일부 개도국들은 미소진 메카니즘 적용배제의 명확화를 위한 등재를 요구함

자료: 농림축산 식품부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3. 12. p. 11의 표 'TRQ 관리 각료결정' (15개 조문과 2개 부속서)

- TRQ 관리는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된 UR 협정문상에서 '수입허가'로 간주되어 동 협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³¹⁾
- 「수입허가절차 협정문」 제1조 제4항 (a)에서는 정보공개 시한 규정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를 최소 21일 전에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TRQ의 경우 TRQ 개시 90일 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수입허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입허가절차 협정문」 제1조 제6항에서는 TRQ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하나의 행정기관 혹은 하나의 관리부서에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입허가절차 협정문」 제3조 제5항 (f)에서는 쿼터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신청이 동시에 검토될 시 쿼터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가 6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함
 - 따라서 허가발행이 쿼터의 효과적인 개시일보다 늦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수입허가절차 협정문」 제3조 제5항 (i)와 관련하여 TRQ 허가는 경제적인 물량(Economic quantity) 단위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녹차 수입 할당 시 경제적 물량이 최소 1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보다 적은 0.3톤의 수입을 허가한다면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므로 경제적 수량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TRQ 소진율(Fill rate)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 수입관리를 위한 절차가 협정의 제3.2조 조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이루어져 행정적인 부담이 없어야 함(미소진된 쿼터에 대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검증만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이 지워져 미소진된 쿼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업자가 소유한 수입허가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시의 예측 가능한 이유 외의 이유로 온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면 수입국에서는 미소진의 이유를 조사해야 함

31) 임송수,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제161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 pp. 9~11.

- 또한 새로운 수입허가를 고려할 시 미소진 원인을 고려해야 함
 - 만약 합리적인 이유없이 미소진 상태에 있다면 수입국에서는 수입권에 대한 양도를 요청해야 함
- 「수입허가절차 협정문」 제3조 제5항 (a)(ii)에 따라 회원국들은 양허물량에 대한 수입권한을 가진 수입자에 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며 수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WT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이하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회원국은 부속서 A에 따라 효과적인 재분배(re-allocation) 체계를 확립해야 함

나) 부속서 A의 미소진 메커니즘

- TRQ와 관련한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는 TRQ가 미소진되었을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분배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이며 부속서 A에서 TRQ 소진율 65% 미만이거나 미통보 시 단계별로 미소진 메커니즘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국이 검토 첫 해에 소진율을 미통보했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그 어떤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TRQ 쿼터 의무 이행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수입국은 관련 이해당사국들과 TRQ 수입관리에 대해 논의해야 함³²⁾
 - 해당수입국은 제기된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쿼터의 관리방식 및 관리방식이 쿼터미소진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과 논의해야 하며 적절한 문서자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회원국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국들은 논의된 문서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32) 임송수,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제161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 p. 11.

- 이러한 문서와 논의방식은 미소진 메커니즘의 2단계 및 3단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 혹은 당해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아 미소진 체계가 발동되었을 시 회원국은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관련 품목의 TRQ 관리방식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수입국은 요구받은 특정 조치 혹은 이해당사국들과 사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된 쿼터 소진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함
 - 만약 수입국이 취한 조치로 소진율이 65% 이상이 되었거나, 낮은 소진율이 실제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해당 국가들이 이해했을 시 본 사항이 해결(resolve)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검토되지 않음
 - 단,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있을 시 회원국은 쿼터 관리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3차 년도 및 이후 검토기간 동안 미소진된 물량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됨³³⁾
 - 미소진 메커니즘은 부속서 E에서 다루고 있음
 -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 혹은 해당 기간 내에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3년 연속 소진율이 다음처럼 증가하지 않을 경우
 - 소진율이 40% 초과할 시 최소 8%p
 - 소진율이 40% 이하일 시 최소 12%p
 - 데이터에 따른 시장상황 관련 논의가 수출국들과 합의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논의 내용이 사실상 미소진의 이유가 될 경우
 - 어떠한 이해당사국이라도 미소진 체계 최종단계를 발동하길 원한다는 의향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시했을 경우

33) 임송수,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제161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 p. 12.

〈표 II-4〉 TRQ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단계

3년 연속 TRQ 소진율	연평균 소진 증가율	발동 여부
65% 초과		미발동
40% 초과(65% 미만)	8% 이상	미발동
	8% 미만	발동
40% 이하	12% 이상	미발동
	12% 미만	발동

자료: 임송수,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제161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 p. 12; 임정빈,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p. 28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해당 수입국은 선착순 방식(first come, first served)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TRQ 수입관리방식을 전환한 후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함
 - 수입관리방식 전환을 결정할 시에는 주요 수출국들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함
 - 개발도상국의 경우 TRQ 미소진 메커니즘의 발동 이후 연평균 TRQ 소진 증가율이 선진국 2/3 수준 이상 상승하였을 시 미소진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함

- TRQ 관리 결정에 따른 TRQ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WTO 통보 양식 변경 등의 내용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³⁴⁾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이거나 혹은 TRQ 실적을 WTO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TRQ 관리방식을 변경할 의무는 없음
 - 단 선진국의 경우 본 결정에 따라 모든 국가의 TRQ 관리 정보가 공개되고, 선진국은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이거나 TRQ 실적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발생하게 됨

34) 농림축산 식품부,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3. 12, p. 7.

- 미소진 체계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체계하의 문제들과 관련된 협정들이 명시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어떠한 충돌이 발생했을 시 해당 협정의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기타 2015년 12월에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나이로비 패키지가 타결되었으나 TRQ 관련한 추가적인 합의는 없었으며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대립 및 미국의 반대로 농업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음
- 나이로비 패키지에서는 농업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설정, 수출 국영무역 기업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졌음

Ⅲ.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WTO TRQ) 운영 현황

-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정에서 정한 품목의 일정 물량에 대해 시장접근(market access)이 가능하도록 저율관세할당, 즉 시장접근세율을 적용함
 - 1995년 WTO 출범으로 해외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자 정부는 국내 시장 및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WTO TRQ를 설정함

- 시장접근물량으로 설정된 품목은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농축산물로, WTO TRQ 관리의 목적은 적정한 공급을 통한 국내 농산물 시장 안정임
 - TRQ 제도는 이중관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고율관세를 부과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출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함

- 우리나라의 TRQ 운영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하 WTO TRQ 관리요령) 등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함³⁵⁾
 - 「농안법」 제15조는 농산물의 수입추천에 대해 규정함
 - 「농안법」 제16조는 수입이익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그 외 관련법으로 「양곡관리법」, 「축산법」, 「종자산업법」, 「사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산림법」 등이 있음

3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88%98%EC%82%B0%EB%AC%BC%EC%9C%A0%ED%86%B5%EB%B0%8F%EA%B0%80%EA%B2%A9%EC%95%88%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일자: 2019. 7. 9.

- WTO TRQ 관리요령 제37조는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1. WTO TRQ 적용관세 및 수입실적 현황

- 2019년 8월 기준 WTO TRQ 설정 품목은 63개이며, 배정물량 내 관세 범위는 0~50%임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당시 67개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63개 품목, 226개 세번에 시장접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³⁶⁾
 - 소고기(2001), 돼지고기(1997), 닭고기(1997), 오렌지주스(2004)는 완전 개방되면서 TRQ 내 세율과 TRQ 밖 세율이 일치하게 되어 시장접근물량에서 제외됨
- 최저적용세율인 0%에 해당하는 품목 수는 5개, 최고적용세율인 50%에 해당하는 품목 수는 7개이며, 이를 제외한 절반 이상(약 51%)의 품목이 1.8~11%의 세율이 적용됨

〈표 Ⅲ-1〉 현행 시장접근물량 운영품목 현황(2019)

(단위: %)

시장접근세율	품목 수	품목
0	5	종우, 종돈, 종계, 감자(종자용), 옥수수(종자용)
1.8~11	26	골분, 잠종, 종묘, 뽕나무, 매니옥펠릿, 호밀(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사료용), 벼·현미·쌀, 수수, 메밀, 기타곡물, 가공감자, 밀전분 등, 변성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채유용·사료용 등 대두, 콩나물용·기타 대두, 사료용근채류, 육설분, 참깨유박, 배합사료, 보조사료, 누에고치, 생사
20	12	탈지분유, 유장, 천연꿀, 매니옥, 고구마, 기타서류, 생강, 보리, 인삼 등, 유당, 인조꿀, 땅콩(탈각: 24%)
30	6	조란, 기타감자, 녹두·팥, 맥주맥, 맥아, 에틸알콜
40	7	땅콩(미탈각), 전지분유, 연유, 버터, 녹차, 참깨, 참기름과 분획물

36) 농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mafra/430/subview.do>

〈표 III-1〉의 계속

시장접근세율	품목 수	품목
50	7	양파, 마늘, 고추류, 밤, 오렌지, 감귤류, 대추
총계	63	-

자료: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농림축산식품부, 2019. 3, pp. 31~16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wNDcxNCUyRmFydGNsVm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RhZGRJdGVtMDElMjZyb3clM0QxMCUyNmlzVmld01pbmU1M0RmYWxzZSUyNnBhZ2U1M0QxJTl2c3JiaFdyZCUzRCVFQiU4NiU4RCVFQyU5NyU4NSVFRCU4NiVCNSVFQyU4MyU4MSVFQSVCMYVCQyUyNg%3D%3D>, 검색일자: 2019. 7. 23.

- WTO TRQ 품목별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시장접근품목의 63개 중 4개는 수입물량이 전무함³⁷⁾
 - 해당품목은 종우, 종돈, 감자(종자용), 누에고치임
 - 위 4개 품목 중 종우, 종돈, 감자(종자용)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입이 전무함

- 2018년 기준, 수입은 되었으나 TRQ 설정물량보다 수입이 과소한 품목은 13개임³⁸⁾
 - 물량 대비 수입량이 과소한 품목은 종계, 연유, 조란, 꿀분, 잠종, 종묘, 뽕나무, 마늘, 매니옥펠릿, 고구마, 잣, 참깨유박, 생사임
 - 2018년 종계의 시장접근물량은 461,000수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11,546.6수 수입됨
 - 2018년 연유의 시장접근물량은 130톤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55톤임
 - 2018년 조란의 시장접근물량은 19,515.8톤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117톤임

37) 본문에서 수입물량은 저울관세적용분, 고울관세적용분, 기타관세(할당, 조정 등)를 모두 포함한 수입량을 의미함

38) 과소한 품목은 설정물량 대비 수입량이 30% 미만인 품목임. 단 수입량이 없는 품목은 위에서 별도로 서술함

- 2018년 콜분의 시장접근물량은 467.6톤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1톤임
- 2018년 잠종의 시장접근물량은 9,500상자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70상자임
- 2018년 종묘의 시장접근물량은 145,200주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252주임
- 2018년 뽕나무의 시장접근물량은 1,402,700주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10주임
- 2018년 마늘의 시장접근물량은 44,467톤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5,760톤임
- 2018년 매니옥펠릿의 시장접근물량은 1,000,000톤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130,000톤임
- 2018년 고구마의 시장접근물량은 18,535톤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101톤임
- 2018년 잣의 시장접근물량은 52,900인 데 반해 당해 수입량은 약 28톤임
- 2018년 생사의 시장접근물량은 2,254톤인 데 반해 2018년 수입량은 약 87톤임

□ 반면 2018년 수입량이 TRQ 설정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은 11개임

- 해당 품목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녹두·팥, 밤, 대추, 생강, 벼·현미·쌀, 메밀, 기타 가공곡물, 에틸알콜, 배합사료임
 - 위 품목 중 탈지분유, 전지분유, 밤, 벼·현미·쌀은 최근 3년간 증량되지 않음
- 배합사료의 경우 3년간 TRQ를 약 45% 가까이 증량해 왔으며, 2018년의 수입량이 설정물량을 초과함
 - 배합사료의 시장접근물량은 2016년 960톤, 2017년 1,300톤, 2018년 1,400톤임

□ 한편 품목 중 시장접근세율만 적용받은 품목은 종계와 에틸알콜임

- 종계의 경우 2018년 현행 설정물량이 461,000수이며 당해 수입량은 약 11,546수로 수입전량이 시장접근세율을 적용받음
- 에틸알콜의 경우 2018년 현행 설정물량은 약 1만킬로리터이며 당해 수입량은 약 8백만킬로리터로 수입전량이 시장접근세율을 적용받음

2.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이행률 현황

- 정부는 WTO TRQ 운영 시, 해당 품목들의 수입 수요가 시장접근물량 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증량기준에 부합할 경우 증량을 허용함
 - 민간업체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지속적인 증량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증량물량을 설정하고 있음
 - 농식품 관련 민간 유통업체나 가공식품업체는 관세가 낮은 TRQ 물량의 취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함³⁹⁾
 - TRQ는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장접근물량 한도를 운영해서 해당 품목들이 추천세율(W1)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최초의 시장접근물량 한도는 UR 협상 당시 1988~1990년 평균 소비량-수입량에 근거하여 기 책정하며, 추천세율(W1)은 양허세율로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증량의 기준은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공급기반이 취약한 물품인 경우,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품목인 경우 등임⁴⁰⁾
 - 팥, 참깨, 대두는 국내 수급조절을 위한 기초농산물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량을 증량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옥수수, 유장, 보조사료, 사료용 근채류 등은 국내 공급기반이 취약한 물품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량정책을 유지함
 - 감자분, 감자·밀·매니옥·고구마전분은 국내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량을 증량함

39) 반면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국내농가는 시장접근물량 증가가 국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임

40) 기재부(관세정책관실 산업관세과) 보도자료,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2008. 3. 25, p. 3.

- 정부는 WTO TRQ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증량한 물품의 수입이행률을 확인하고 있음
 - 수입이행률(Fill Rate)이란 시장접근물량 대비 저율관세가 적용된 실제 수입량을 백분위화한 수치임
 - 정부는 수입이행률을 채운 품목에 대해서는 증량 수요를 파악해 반영하며, 수입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증량 품목의 경우 증량이행 여부를 재검토함

- 최근 3년간(2016~2018)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 63개 중 16개인 전체의 약 25%가 증량됨
 - 양파, 마늘, 녹두·팥, 옥수수(사료용), 가공감자, 맥아, 밀전분 등, 기타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콩나물용기타대두, 땅콩, 참깨, 사료용근채류, 배합사료, 보조사료임
 - 양파의 기본물량은 20,645톤으로 2016년에 50,000톤을 증량하였으며, 2017년, 2018년에는 별도의 증량없이 2016년과 동일하게 70,645톤으로 설정함
 - 마늘의 기본물량은 14,467톤으로 2016년 36,000톤을 증량하였으며, 2017년, 2018년에 기본물량에 30,000톤을 증량함
 - 녹두·팥의 기본물량은 14,694톤으로 2016년 9,900톤 증량, 2017년 11,800톤 증량, 2018년에 10,300톤을 증량함
 - 옥수수(사료용)의 기본물량은 천만톤이며, 2016년 1,920,457톤 증량, 2017년 200,457톤, 2018년 221,1257톤을 증량함
 - 가공감자의 기본물량은 10톤이며, 2016년 2,590톤 증량, 2017년 2,420톤 증량, 2018년 2,106톤을 증량함
 - 맥아의 기본물량은 40,000톤이며, 2016년 182,000톤, 2017년 75,000톤, 2018년 165,000톤을 증량함
 - 밀전분 등의 기본물량은 227.4톤이며, 2016년 1,800톤, 2017년 2,200톤, 2018년 2,644.6톤을 증량함
 - 기타 전분의 기본물량은 45,692톤이며 2016년 105,700톤, 2017년 135,700

Ⅲ.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WTO TRQ) 운영 현황 39

- 톤, 2018년 137,791톤을 증량함
- 매니옥전분의 기본물량은 2,400톤이며 2016년 34,000톤, 2017년 전년 동일, 2018년에는 30,000톤을 증량함
 - 고구마전분의 기본물량은 4,376톤이며 2016년~2018년까지 기본물량에 동일하게 20,624톤 증량함
 - 콩나물용기타대두의 기본물량은 185,787톤이며 2016년 59,000톤, 2017년 53,000톤, 2018년 48,631톤 증량함
 - 땅콩의 기본물량은 49,073톤이며 2016년~2018년까지 기본물량에 동일하게 3499.7톤 증량함
 - 참깨의 기본물량은 6,731톤이며 2016년, 2017년은 기본물량에 동일하게 49,269톤 증량, 2018년은 기본물량에 47,269톤 증량함⁴¹⁾
 - 사료용근채류는 2016년 640,000톤에서 2017년 1,240,0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량했다가 2018년에 618,500톤으로 감량함⁴²⁾
 - 배합사료의 기본물량은 627톤이며 2016년 333톤, 2017년 673톤, 2018년 773톤 증량함
 - 보조사료의 기본물량은 6,000톤이며 2016년~2018년까지 기본물량에 동일하게 84,490톤 증량함

〈표 Ⅲ-2〉 WTO TRQ 증량 현황(2016~2018)

			설정물량		
	품목군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1	종우	두	1,067	1,067	1,067
2	종돈	두	1,850	1,850	1,850
3	종계	수	461,000	461,000	461,000
4	탈지분유	톤	1,034	1,034	1,034
5	전지분유	톤	573	573	573

41) 전년 대비 감량함

42) 사료용식물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하므로 연도별 기본물량이 상이함

〈표 Ⅲ-2〉의 계속

	품목군	단위	설정물량		
			2016년	2017년	2018년
6	연유	톤	130	130	130
7	유장	톤	54,233	54,233	54,233
8	버터	톤	420	420	420
9	조란	톤	19,515.8	19,515.8	19,515.8
10	천연꿀	톤	420	420	420
11	꿀분	톤	467.6	467.6	467.6
12	잡종	상자	9,500	9,500	9,500
13	종묘	주	145,200	145,200	145,200
14	뽕나무	주	1,402,700	1,402,700	1,402,700
15	감자(종자용)	톤	1,898	1,898	1,898
16	기타 감자	톤	18,810	18,810	18,810
17	양파	톤	70,645	70,645	70,645
18	마늘	톤	50,467	44,467	44,467
19	고추류	톤	7,185	7,185	7,185
20	녹두·팥	톤	24,594	26,494	24,994
21	매니옥	톤	50,000	50,000	50,000
22	매니옥펠릿	톤	1,000,000	1,000,000	1,000,000
23	고구마	톤	18,535	18,535	18,535
24	기타서류	톤	326.7	326.7	326.7
25	밤	톤	2,170	2,170	2,170
26	잣	톤	52,900	52,900	52,900
27	오렌지	톤	57,017	57,017	57,017
28	감귤류	톤	2,097	2,097	2,097
29	대추	톤	259.5	259.5	259.5
30	녹차	톤	7.8	7.8	7.8
31	생강	톤	1,860	1,860	1,860
32	호밀(종자용)	톤	1,327.3	1,327.3	1,327.3
33	맥주맥	톤	39,000	39,000	39,000
34	보리	톤	23,582	23,582	23,582
35	귀리(종자용)	톤	597.3	597.3	597.3
36	옥수수(종자용)	톤	247	247	247

〈표 III-2〉의 계속

			설정물량		
	품목군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37	옥수수(사료용)	톤	11,920,457	12,010,457	12,211,257
38	벼, 현미, 쌀	톤	408,700	408,700	408,700
39	수수(종자용)	톤	13.7	13.7	13.7
40	메밀	톤	1,328	1,328	1,328
41	기타 가공곡물	톤	14.7	14.7	14.7
42	가공감자	톤	2,600	2,430	2,116
43	맥아	톤	222,000	215,000	205,000
44	밀전분 등	톤	20,274	2,427.4	2,872
45	기타 전분	톤	151,392	181,392	183,483
46	매니옥전분	톤	36,400	36,400	32,400
47	고구마전분	톤	25,000	25,000	25,000
48	채유용, 사료용 등 대두	톤	846,365	846,365	846,365
49	콩나물용, 기타 대두	톤	244,787	238,787	234,418
50	땅콩	톤	8,407	8,407	8,407
51	참깨	톤	56,000	56,000	54,000
52	인삼 등	톤	57	57	57
53	사료용 근채류*	톤	640,000	1,240,000	618,500
54	참기름/분획물	톤	668	668	668
55	유당	톤	9,400	9,400	9,400
56	인조꿀	톤	6	6	6
57	에틸알콜	kl	10,333.8	10,333.8	10,333.8
58	육설분	톤	3,210	3,210	3,210
59	참깨유박	톤	212	212	212
60	배합사료	톤	960	1,300	1,400
61	보조사료*	톤	90,490	90,490	90,490
62	누에고치	톤	1,143	1,143	1,143
63	생사	톤	2,254	2,254	2,254

주: 1. * 표시된 물량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함

2. 품목군명은 농림축산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자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개정 2016. 9. 20.>, <개정 2017. 3. 24.>, <개정 2018. 3. 2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law.go.kr/lInfoP.do?lsiSeq=208318&efYd=20190329#AJAX>, 검색일자: 2019. 7. 11.

- 2015년을 기준으로 63개 중 23개 품목의 수입이행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함⁴³⁾⁴⁴⁾
- 수입이행률이 30% 미만인 품목은 종우, 종돈, 종계, 연유, 조란, 골분, 잠종, 종묘, 뽕나무, 감자(종자용), 기타 감자, 고추류, 매니옥펠릿, 고구마, 오렌지, 감귤류, 대추, 조(종자용), 인삼, 참기름/분획물, 육설분, 누에고치, 생사임
 - 특히 2015년에 수입이행률이 저조한 품목 중 절반 이상 품목의 이행률이 0%임
 - 2015년 이행률이 0%인 품목은 종우, 종돈, 종계, 조란, 골분, 잠종, 종묘, 뽕나무, 감자(종자용), 매니옥펠릿, 조(종자용), 인삼으로 총 12개임
 - 이행률이 0%인 품목을 제외하면 수입이행률이 30% 미만인 품목 중 최저 이행률은 누에고치(0.1%)이며, 최고 이행률은 기타 감자(24.4%)임
- 통상적으로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① 국내수요가 미미하거나 ② 국내산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⁴⁵⁾
- 반면 2015년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인 품목은 총 28개임⁴⁶⁾
- 해당품목은 버터, 천연꿀, 양파, 마늘, 녹두·팥, 매니옥, 잣, 생강, 호밀(종자용), 맥주맥, 보리, 귀리(종자용), 기타 옥수수, 벼·현미·쌀, 메밀, 가공감자, 맥아, 밀전분 등, 기타 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대두, 땅콩, 참깨, 사료용근채류, 인조꿀, 배합사료, 보조사료임
 - 특히 2015년을 기준으로 이행률이 90% 이상 품목 28개 중 23개 품목은 이행률이 100%임

43) 농림축산식품부, 『WTO TRQ 이행률 현황(2015)』, 2016. 12. <http://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wNDc4NyUyRmFydGNsVml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zZGVtdHllM0QyMDE2LjAxLjAxJTl2cGFzc3dvcmQ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yb3clM0QxMCUyNmIzVmlll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xJTl2c3JjaFdyZCUzRFdUTyUyNg%3D%3D>, 검색일자: 2019. 7. 24.

44) 이행률이 저조한 수준을 30% 미만으로 정한 것은 선행연구(서진교, 2004, p. 63)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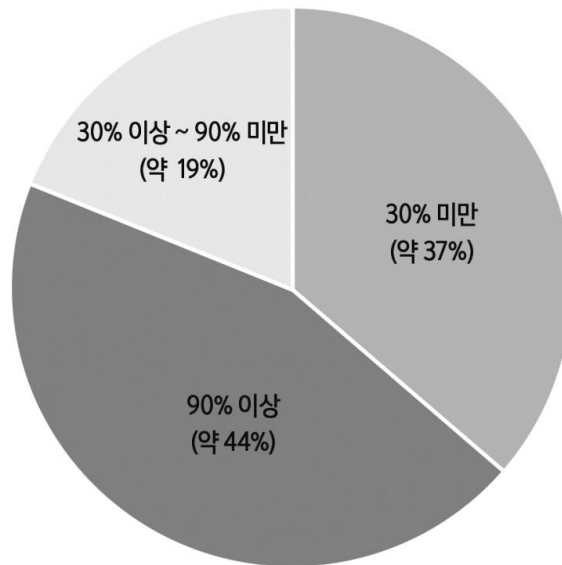
45) 서진교,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2004. 7, p. 61.

46) 이행률이 높은 수준을 9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선행연구(서진교, 2004, p. 63)를 따름

- 해당품목은 양파, 마늘, 녹두·팥, 매니옥, 잣, 호밀(종자용), 맥주맥, 보리, 귀리(종자용), 옥수수(기타), 벼·현미·쌀, 가공감자, 맥아, 밀전분 등, 기타 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대두, 땅콩, 참깨, 사료용근채류, 배합사료, 보조사료임

- 위 품목들이 이행률이 높은 이유는 ① 국영무역으로 의무적으로 전량을 수입하거나 ② 국내생산이 없어 국내소비에 비해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이기 때문임⁴⁷⁾
 - 쌀은 국영무역품목으로 물량 전량 수입함
 - 통상적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으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행률이 높고 이에 따라 수입가능성도 높음

[그림 Ⅲ-1] TRQ 품목의 수입이행률 분포(2015)



자료: 농림축산부 정책실 사전정보공개, 『WTO TRQ 이행률 현황』(2010~20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7) 임정빈, 『우리나라 관세할당(TRQ)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2007, p. 51.

〈표 III-3〉 시장접근물량설정품목 이행률 현황(2010~20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년 평균 (2013~2015)
1	종유	0	0	0	0	0	0	0.2
2	중돈	75	100	100	28	42	0	23.2
3	중계	100	100	100	0	0	0	0
4	탈지분유	82	100	100	94	98	84.2	92.3
5	전지분유	7	100	100	23	53	78.7	51.5
6	연유	0	100	0	0	100	14.8	38.2
7	유장	66	48	57	41	33	37.7	37.1
8	버터	100	100	100	100	100	99.5	99.8
9	조란	0	0	0	0	0	0	0
10	천연꿀	100	96	100	81	98	90.2	89.8
11	꿀분	0	0	0	0	0	0	0
12	잡종	0	0	0	0	0	0	0
13	종묘	0	0	0	0	0	0	0
14	뽕나무	0	0	0	0	0	0	0
15	감자 (종자용)	0	0	0	0	0	0	0
16	기타 감자	100	100	100	61	35	24.4	40.1
17	양파	79	100	100	100	5	100.0	68.3
18	마늘	100	100	100	14	6	100.0	39.9
19	고추류	97	100	100	24	15	13.9	17.4
20	녹두·팥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21	매니옥	81	100	100	100	100	100.0	100.0
22	매니옥 팻릿	25	25	38	36	29	0	21.4
23	고구마	1	1	1	1	1	0.9	0.7
24	기타서류	63	80	75	75	84	83.3	80.9
25	밤	60	85	91	100	88	74.6	87.7
26	잣	0	0	0	0	0	100.0	33.3
27	오렌지	100	100	100	45	32	17.9	31.6
28	감귤류	0	0	0	0	0	21.5	7.2
29	대추	4	27	67	14	0	3.5	5.9

Ⅲ.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WTO TRQ) 운영 현황 45

〈표 Ⅲ-3〉의 계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년 평균 (2013~2015)
30	녹차	87	51	77	84	58	66.7	69.3
31	생강	100	62	92	75	90	98.1	87.6
32	호밀 (종자용)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33	맥주맥	43	100	100	100	100	100.0	100.0
34	보리	100	98	100	89	100	100.0	96.2
35	귀리 (종자용)	100	80	100	100	100	100.0	100.0
36	옥수수 (종자용)	100	100	100	80	88	84.5	84.1
37	옥수수 (사료용)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38	벼, 현미, 쌀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39	수수 (종자용)	94	100	88	100	40	60.5	33.6
40	메밀	100	88	100	88	93	94.0	94.1
41	조(종자용)	0	100	0	0	0	0	0
42	기타 가공곡물	100	100	75	70	75	78.6	74.5
43	가공감자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44	맥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45	밀전분 등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46	변성전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47	매니옥전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48	고구마전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49	대두	86	100	100	100	100	100.0	100.0
50	땅콩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51	참깨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52	인삼 등	37	0	0	0	0	0	0
53	사료용 근채류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54	참기름/ 분획물	74	100	93	83	47	20.6	50.3
55	유당	100	100	100	100	84	67.5	83.9

〈표 Ⅲ-3〉의 계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년 평균 (2013~2015)
56	인조꿀	0	91	100	100	100	99.0	99.6
57	에틸알콜	99	99	100	100	81	80.7	60.2
58	육설분	3	0	0	0	4	6.7	3.7
59	참깨유박	0	0	94	0	0	34.0	11.3
60	배합사료	40	31	67	42	99	100.0	80.4
61	보조사료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62	누에고치	0	0	0	0	0	0.1	0.1
63	생사	23	20	19	16	14	12.4	14.1

주: 음영부분은 증량 품목
 자료: 농림축산부 정책실 사전정보공개, 『WTO TRQ 이행률 현황』, 2010~2015의 자료 인용

- 증량품목 중 2013~2015년간 평균 이행률이 가장 낮은 품목은 마늘이며, 양파, 배합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3년 평균 이행률은 100%임
 - 마늘은 2013~2015년간 평균 이행률이 약 40%로 증량품목 중에서는 평균 수입이행률이 가장 낮음
 - 마늘은 우리나라 주요 농산품으로 국내생산이 급증한 1999년에 일시적으로 30%대의 낮은 수입이행률을 보였으나, 1995년~2003년까지는 평균 수입이행률이 85.2%로 대체로 높은 수입이행률을 보였던 품목임
 - 하지만 최근 마늘의 국내재배 확대로 국내공급물량이 확대되고 국내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감소한 상태로 국내공급물량에 따라 수입등락이 있음⁴⁸⁾
 - 2013~2015년간 양파의 평균 이행률은 약 68%이며, 배합사료의 평균 이행률은 약 80%임⁴⁹⁾
- 정부는 물가안정 및 시장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TRQ 품목을 증량해오고 있으나, 이행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48) 국산 깬마늘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6년 10,895원/KG, 2017년 9,909원/KG, 2018년 9,401원/KG 2019년 9,150원/KG임. 농수산물유통정보, <https://www.kamis.or.kr/customer/main/main.do#>, 검색일자: 2019. 7. 29.

49) 배합사료는 국내생산보다 수입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품목임

- 2013~2015년 3년간 평균 이행률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이행률보다 낮음
 - 2013~2015년 평균 이행률은 58.2%로 2010~2012년 67.4%보다 낮아지고 있음
-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증량 물량 대비 수입량이 적다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증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량 증가율이 증량 대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함

3. 물량관리방식

- WTO 회원국 정부는 품목별 시장접근관리방식을 독자적 권한으로 결정함
 - 시장접근관리방식은 시장접근물량 내 수입권의 배분방식에 따라 수입차익의 크기와 배분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음
 - 실제 수입량과 수입량의 배분, 수출공급 국가들 간의 수입국 시장 점유율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음
- WTO에서 공인한 시장접근관리 유형은 단일관세, 선착순, 수입허가, 공매, 과거실적,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등의 방식이 있으며 2개 이상을 혼합한 방식도 있음
 - WTO 기준, 관세, 선착순, 공매 등은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임
 - 과거실적배분,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등은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임
-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TRQ 관리방식은 단일방법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혼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⁵⁰⁾
 - 단일관리방식으로 지정기관 배정방식,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이 있음
 - 혼용방식은 위 세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관리하는 것임
 - 혼용방식은 지정기관 배정방식(A), 수입권공매(B), 실수요자배정(C)을 A+B, A+C, B+C, A+B+C 형태로 혼합한 것을 말함

50) WTO에서는 9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가지 방식만 운용함. 수입관리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저율로 수입한 이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하기 위해서임

1)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생산자단체추천)

- 우리나라의 지정기관배정방식의 운용은 UR 협상 이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규율함
 - 동법은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시행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법은 국제규약으로 GATT 제13조(수량제한의 무차별적용), 제17조(국영무역기업) 조항을 통해 무차별대우의 원칙, 상업주의원칙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지정기관 배정방식은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민간품목들이 이 방식으로 운영됨⁵¹⁾
 - 정부는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TRQ 물량을 배정하고 해당 기관에 TRQ의 독점적 수입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기관 배정방식은 사실상 국영무역에 의한 TRQ 관리방식임⁵²⁾
 - 정부가 지정한 수입지정기관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4개 기관임

- 2019년 기준 순수하게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만 운영하는 품목은 쌀(미곡)임
 - 63개 품목 중 쌀만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운영하며 쌀의 수입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임
 - 단 메밀, 참깨, 인삼, 감자(종자용 이외), 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대두는 일부 국영무역 형식으로 관리함
 - 쌀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해 513%이며, 시장접근물량 40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됨

51) 국영무역 사업안내[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04, p. 9.

52) 임정빈, 2010, p. 46.

- 오렌지의 경우 과거 국영무역 품목으로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관리하였으나, TRQ 관세와 양허관세가 동등해서 국영무역을 실시하지 않음
 - 단 기타 감귤류의 경우 양허관세와 TRQ 관세율이 차이가 있어 이자도입방식에 의한 공매를 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가 없음⁵³⁾
- 국영무역방식으로 관리하는 쌀의 최근 9년간(2010~2018년) 이행률은 100%이며 이는 국영무역방식의 전형적인 특징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방식을 통해 관리함
- 수입지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기금에 적립하여 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하여 국내 수급안정 및 생산농가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함
 - 국영무역사업 수익금은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 귀속시켜 농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함

2) 수입권공매

- 수입권공매는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 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이며 기관이 주최하는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수입함
 - 판매이익금(판매가격-도입원가)의 일부에 대해 수입권공매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함⁵⁴⁾

53)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내용

54) 수입권공매는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차익(Import Mark-up)의 일부를 농안기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고액납입 희망자 순으로 수입권을 부여하는데, 이 경우 낙찰자는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 판매할 수 있음. 낙찰자가 낙찰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보증금으로 제시된 낙찰대금 총액의 10%는 관련 기금에 귀속되며, 3년간 수입권공매 입찰을 금지시킬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수입권공매방식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서 TRQ 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차익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운영됨

□ 2019년 기준 순수하게 수입권공매로만 운영하는 품목은 밤임

- 수입권 공매는 국영무역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 국내외 가격차가 커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수입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품목임⁵⁵⁾
- 2014년에는 밤 외에도 인삼, 생강, 땅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혼합방식으로 변경됨

□ 밤의 공매주관기관은 산림조합이며, 입찰물량 내 최고가 순으로 낙찰됨

- 낙찰물량에 대한 도입은 낙찰업체가 수입이행기한 내에 도입완료해야 함
- 입찰시기는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음
 - 참깨, 대두 등 수급상 부족품목은 연중 입찰을 시행함

3) 실수요자배정

□ 실수요자배정은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 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임

- 최소 비용의 수입을 통해 국내 농업의 생산비 인하와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는 품목이 수입허가 제도의 대상임⁵⁶⁾

□ 대부분의 TRQ 품목이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착순 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입차익의 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임⁵⁷⁾

55) 임정빈, 2010, p. 49.

56) 임정빈, 2010, p. 50.

57) 임정빈, 2010, p. 51.

- 63개 품목 중 48개 품목인 약 64%가 실수요자배정방식에 해당됨

4) 혼합방식

□ 우리나라는 세 가지 형태의 혼합방식을 가지고 있음

- 지정기관+수입권공매에 해당하는 품목은 메밀, 참깨, 인삼임
 - 특히 참깨는 자급생산률이 낮아 국내외 가격격차가 매우 큰 품목임
- 지정기관+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감자(종자용 이외), 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대두임
- 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천연꿀, 낙화생, 참기름과 그 분획물임
 - 동 혼합방식 운용의 예로 천연꿀을 보면, TRQ 물량 420톤 가운데 320톤은 수입권공매방식, 100톤은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III-4〉 우리나라 시장접근물량(TRQ) 수입관리방식 비교(2014, 2017~2019)

관리방식	2014년 해당 품목	2017 해당 품목	2018 해당 품목	2019년 해당 품목
지정기관배정	쌀	쌀	쌀	쌀
수입권공매	인삼, 생강, 밤, 땅콩	밤, 인삼	밤, 인삼	밤
단일	<p>보리, 종돈,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에틸알콜, 보조사료, 종계, 버터, 매니옥, 옥수수, 감귤류, 맥주맥, 옥수수, 감귤류, 연유, 감자(종자용), 매니옥펠리트, 유장, 호밀, 탈지분유, 잣 등</p> <p>실수요자배정</p>	<p>종돈, 보리, 녹차, 에틸알콜, 보조사료, 종계,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기타 가공곡물, 맥아, 감자분, 밀전분 등,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종유, 전지분유, 연유, 조란, 꿀분, 잠종, 모목류, 뽕나무, 감자(종자용), 고구마, 잣, 오렌지, 감귤류, 대추, 조(종자용), 사료용 근채류, 참깨유박, 기타배합사료, 탈지분유, 유장, 버터, 매니옥펠리트, 기타서류, 호밀(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유당, 인조꿀, 옥·꿀분, 누에고치, 생사</p>	<p>종돈, 보리, 녹차, 에틸알콜, 보조사료, 종계,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기타 가공곡물, 맥아, 감자분, 밀전분 등,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종유, 전지분유, 연유, 조란, 꿀분, 잠종, 모목류, 뽕나무, 감자(종자용), 고구마, 잣, 오렌지, 감귤류, 대추, 조(종자용), 사료용 근채류, 참깨유박, 기타배합사료, 탈지분유, 유장, 버터, 매니옥펠리트, 기타서류, 호민(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유당, 인조꿀, 옥·꿀분, 누에고치, 생사</p>	<p>종유, 종돈, 종계,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유장, 버터, 꿀분, 잠종, 사과나무 등 종모, 뽕나무, 종자용 감자, 매니옥, 매니옥펠리트, 고구마, 기타서류, 잣, 오렌지, 감귤류, 대추, 녹차, 호밀, 맥주맥, 보리, 귀리, 종자용 옥수수, 옥수수, 수수(종자용), 조, 기타 가공 곡물, 감자분, 맥아, 밀전분 등, 변성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사료용 근채류, 유당, 인조꿀, 에틸알콜, 육분, 참깨유박, 기타배합 사료, 보조사료, 누에고치, 생사</p>
혼합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메밀·기타곡물, 참깨, 미늘, 양파	늑두·팥, 메밀·기타 곡물, 참깨	메밀, 참깨, 인삼

〈표 III-4〉의 계속

관리방식	2014년 해당 품목	2017 해당 품목	2018 해당 품목	2019년 해당 품목
지정기관+ 실수요자배정	-	대두	녹두·팥, 대두	-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고추, 녹두·팥, 대두	양파, 마늘, 고추,	양파, 마늘, 고추	감자(종자용 이외), 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대두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감자(종자용 이외), 친연फल, 참기름과 그 분획물, 대추	친연फल, 감자(종자용이외), 참기름과 그 분획물, 생강, 낙화생	친연फल, 감자(종자용이외), 참기름과 그 분획물, 생강, 낙화생	친연फल, 낙화생, 참기름과 그 분획물
계	63개 품목	63개 품목	63개 품목	63개 품목

자료: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진 및 수입관리 요령, 2019,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577>;
 임정빈, 2014, p. 15의 〈표 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IV. FTA TRQ 물량 운영 현황

1. FTA TRQ 운영 현황

- WTO TRQ 관리 근거 법률이 농안법인 데 반해, FTA TRQ 관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함
 -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동법 제19조 제3항은 농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 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은 WTO TRQ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관세율할당물량이란 FTA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함
 - 관세율 할당물품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쿼터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수량은 양허내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

- FTA별로 대상품목, 대상물량, 추천대행기관, 배정방식 및 연차별 적용물량이 상이함
 - 시장접근물량(WTO TRQ)과 별개로, FTA 또한 TRQ 품목을 설정해 협정별로 상이한 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WTO TRQ 품목 63개 중 18개 품목이 주요 3개국 FTA TRQ와 중복됨⁵⁸⁾

○ 본 연구에서는 주요 3개국 FTA로 미국, EU, 중국과의 FTA TRQ에 대해 살펴봄

〈표 IV-1〉 WTO TRQ 및 3개국 FTA TRQ 중복품목 비교

	품목	WTO TRQ 품목	한-미 FTA TRQ 품목	한-EU FTA TRQ 품목	한-중 FTA TRQ 품목
1	탈지분유	○	○	○	
2	전지분유	○	○	○	
3	연유	○	○	○	
4	유장	○	○	○	
5	버터	○	○	○	
6	천연꿀	○	○	○	
7	식용감자	○	○		
8	오렌지	○	○	○	
9	보리	○	○		
10	맥주맥·맥아	○	○	○	
11	식용대두	○	○		
12	인삼	○	○		
13	사료용식물	○	○		
14	보조사료	○	○	○	
15	변성전분	○	○	○	
16	팥	○			○
17	고구마전분	○			○
18	참깨	○			○

자료: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부록 참고)과 한-미·한-EU·한-중 FTA 협정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58) 임정빈, 2010, p. 31.

- 2019년 WTO TRQ 증량품목 중 한-미 FTA, 한-EU FTA 증량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은 맥아, 변성전분, 보조사료임
 - 맥아의 2019년 WTO TRQ는 20만톤으로 기본물량에서 16만톤을 증량했고, 2019년 한-미 FTA 적용 물량은 10,338톤, 한-EU FTA 적용 물량은 13,956톤임
 - 변성전분의 2019년 WTO TRQ는 약 18만톤으로 기본물량에서 약 13만 5천톤을 증량했고, 2019년 한-미 FTA 적용 물량은 17,218톤, 한-EU FTA 적용 물량은 39,392톤임
 - 보조사료의 2019년 WTO TRQ는 약 9만톤으로 기본물량에서 약 8만 4천톤을 증량했고, 2019년 한-미 FTA 적용 물량은 17,218톤, 한-EU FTA 적용 물량은 6,764톤임
 - 맥아의 경우 2026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에 따라 무제한 증량됨
 - 변성전분의 경우 2023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에 따라 무제한 증량됨
 - 보조사료의 경우 2023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에 따라 무제한 증량됨

〈표 IV-2〉 2019년 기준 증량품목(15개)에 대한 세율 분석(FTA 세율 및 철폐기간 등 반영)

품목번호	품명	WTO TRQ			FTA TRQ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한-미		한-EU
					물량 (톤)	세율(%)	
0713	긴조한 채두류(菜豆類)(고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표백 처리여부에 상관없다)	14,694톤	9,900톤	24,594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0713 3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713 31	녹두비그나 명고(엘)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레(Vigna radiata (L.) Wilczek)종						
0713 31 1000	종사용						
0713 31 9000	기타						
0713 32	팜이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713 32 1000	종사용						
0713 32 9000	기타						
1003	보리	30,000톤	13,000톤	43,000톤	해당없음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1003-90-3000 단 해당)	13,956 (1003-10-1000 1003-90-1000) (2026년부터 무제한)	0/224.4 (상반기256.5) (1003-10-1000 1003-90-1000) 1003-90-1000
1003 10	종자						
1003 10 1000	맥주보리						
1003 90	기타						
1003 90 1000	맥주보리						
1005	옥수수	9,200,000톤*	1,921,800톤	11,121,800톤	사료용 옥수수 기준	사료용 옥수수 기준	해당없음
1005 90	기타						
1005 90 1000	사료용						
1005 90 2000	팜콘						
1005 90 9000	기타						
1103	곡물의 부산·알곡·거친 기루·펠릿(pellet)						

〈표 IV-2〉의 계속

품목번호	품명	WTO TRQ			FTA TRQ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한-미		한-EU	
					물량 (톤)	세율(%)	물량 (톤)	세율(%)
1103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	13	옥수수로 만든 것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얇게 부순 것						
1104	2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104	23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2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12	식품용						
1108	12	기타						
0712		진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	90	20	그 밖의 채소					
0712	90	209	기타					
0712	90	2092	스위트콘(기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0톤	1,611톤	1,621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299
(1108-12-1000,
1108-12-9000)
(2026년부터
무제한)

0/105.4

〈표 IV-2〉의 계속

품목번호	품명	WTO TRQ			FTA TRQ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한-미		한-EU	
					물량 (톤)	세율(%)	물량 (톤)	세율(%)
1105 10 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맥아(북은 것인저에 상관없다) 부지 않은 것 북은 것 훈연(燻煙)한 것							
1105 20 0000								
1107 10 0000		40,000톤	160,000톤	200,000톤	10,338 (1107-10-0000) (2026년부터 무제한)	0/125.5	13,956 (1107-10-0000) (2026년부터 무제한)	0/117.6 (상반기134.5) (1107-10-0000)
1107 20 0000								
1107 20 1000								
1108 1 0000	진분과 이눌린(inulin) 진분 밀로 만든 것 그 밖의 진분 기타 이눌린(inulin)	227.4톤	3,072.6톤	3,300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08 11 0000								
1108 19 0000								
1108 19 9000								
1108 20 0000								
1108 1 0000	진분과 이눌린(inulin) 진분 감자로 만든 것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진분에는: 프리젤라타나이지드(pregelatinised) 진분이나 에스테르화 진분, 진분·텍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yc)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진분 배소진분	45,692톤	135,240톤	180,932톤	17,218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023년부터 무제한)	0/128.5	39,392 (3505-10-4010 (상반기 148.3)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023년부터 무제한)	0/118.6 (상반기 148.3)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023년부터 무제한)
1108 13 0000								
3505 10 3000								
3505 10 4010								
3505 10 4090	프리젤라타나이지드(pregelatinised)진분 이나 스텔링 진분 식품용 기타							

〈표 IV-2〉의 계속

품목번호	품명	WTO TRQ			FTA TRQ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한-미 물량 (톤)	세율(%)	한-EU 물량 (톤)	세율(%)
3505 10 50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식품용 기타 기타 식품용 기타 글루(gluce) 전분 글루(glue) 텍스트린 글루(glue) 기타							
3505 10 5010								
3505 10 5090								
3505 10 90								
3505 10 9010								
3505 10 9090								
3505 20								
3505 20 1000								
3505 20 2000								
3505 20 9000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전분 매니옥(manioc)키사버(cassava)으로 만든 것 식품용 기타	2,400톤	17,000톤	19,400톤	해당없음		해당없음	
1108 1								
1108 14								
1108 14 1000								
1108 14 9000								
1108 19								
1108 19 1000	그 밖의 전분 고구마로 만든 것	4,376톤	20,624톤	25,000톤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1	대두(부수있는지에 상관없다) 종자 콩나물용 기타 기타 콩나물용 기타	185,787톤	43,000톤	228,787톤	28,162 (1201-10-1000, 1201-10-9000, 1201-90-3000, 1201-90-9000)	0/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1 10								
1201 10 1000								
1201 10 9000								
1201 90								
1201 90 3000								
1201 90 9000								
1201 90 9000								

〈표 IV-2〉의 계속

품목번호	품명	WTO TRQ		FTA TRQ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한-미		한-EU	
					물량 (톤)	세율(%)	물량 (톤)	세율(%)
1202	망종(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테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3,499.7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8,407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2 30	종자							
1202 30 1000	껍테기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30 2000	껍테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4	기타							
1202 41 0000	껍테기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42 0000	껍테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파슬·진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셀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진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 11	땅콩							
2008 11 9000	기타							
1207	그 밖의 채류(莢)에 적합한 종자와 파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7 40 0000	참깨	6,731톤	43,269톤	50,000톤				
1214	스워드(sv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진조·루우신(lucerne)(일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지(ver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600,000톤*	18,500톤	618,500톤	200,000 (1214-90-9090)	0/46.9	해당없음	
1214 90	기타							

〈표 IV-2〉의 계속

품목번호	품명	WTO TRQ			FTA TRQ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한-미		한-EU	
					물량 (톤)	세율(%)	물량 (톤)	세율(%)
1214 90 1000	사료용 부리계소류 기타 기타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비(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이)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214 90 90								
1214 90 9090								
2308 00								
2308 00 9000	기타							
2309 90	사료용 조제품							
2309 90 10	기타							
2309 90 109	배합사료							
2309 90 1091	기타							
2309 90 1091	대용유(代用乳)	627톤	1,073톤	1,700톤	해당없음	6,764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2023년 부터 무제한)	0/15.5 (상반기 19.4)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2099, 2309-90-9090) (2023년 부터 무제한)	
2309 90	사료용 조제품	6,000톤*	84,490톤	90,490톤				
2309 90 20	기타							
2309 90 2010	보조사료							
2309 90 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17,218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2023년 부터 무제한)	0/168		
2309 90 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309 90 209	기타							
2309 90 2099	기타							
2309 90 90	기타							
2309 90 9090	기타							

주: 2019년 시장점근물량의 현행 물량 중 '*' 표시된 물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함

2. 주요국과의 FTA TRQ 운영 현황

가. 한-미 FTA TRQ 운영 현황

-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18개 품목에 대해 FTA TRQ가 적용됨
 - 협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민감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Tariff Rate Quota),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이행하기로 함⁵⁹⁾
 - FTA TRQ 품목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식용유장, 버터, 치즈류, 천연꿀, 식용감자, 오렌지, 보리, 맥주맥·맥아, 옥수수전분, 식용대두, 인삼, 사료용식물, 조제분유, 보조사료, 변성전분 등 18개임

- FTA TRQ 품목(18) 중 치즈류, 옥수수전분, 조제분유(유아용)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시장접근물량 품목과 중복됨
 - 시장접근물량과 FTA TRQ 중복 품목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식용유장, 버터, 천연꿀, 식용감자, 오렌지, 보리, 맥주맥·맥아, 식용대두, 인삼, 사료용식물, 보조사료, 변성전분 등 15개임
 - 단 유장분말의 경우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만 포함되고, 보리의 경우 겉보리(1003-90-2000)와 쌀보리(1003-90-3000)만, 맥주맥·맥아의 경우 맥주보리, 볶지않은 맥아만 포함됨

- TRQ 품목 중 사료용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FTA TRQ 물량이 매년 증가하도록 협약됨⁶⁰⁾
 - 사료용식물의 FTA TRQ는 20만톤으로 2016~2018년까지 동일함
 - 나머지 품목은 매년 증량되다가 무제한임⁶¹⁾

59)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173호(2016. 12. 21))에 의거함

60) 한-미 FTA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참조

- 비중복 품목인 치즈류와 조제분유(유아용)의 경우 최근 한-미 FTA TRQ 물량으로 수입된 것이 없음
- 미국산 치즈와 분유 수입은 최근 EU와 뉴질랜드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라 감소 추세임⁶²⁾
 - 치즈류의 한-미 FTA TRQ는 2016년 7,879톤, 2017년 8,115톤, 2018년 8,358톤임
 - 조제분유의 한-미 FTA TRQ는 2016년 788톤, 2017년 811톤, 2018년 836톤임
- 한미 FTA TRQ의 관리방식은 품목별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선착순 방식이 기본 방식임⁶³⁾

〈표 IV-3〉 한-미 FTA TRQ 품목 적용세율 및 증량 현황(2016~2018)

	HSK (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1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탈지 분유	0	5,628	0	5,797	0	5,971
			176		176		176	
			0		0		0	
			176		176		176	
2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전지 분유	0	5,628	0	5,797	0	5,971
			176		176		176	
			0		0		0	
			89		89		89	
3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연 유	0	5,628	0	5,797	0	5,971
			89		89		89	
			0		0		0	
			89		89		89	

61) 부록 II. 참고

62)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산업통상부, 2018, p. 494.

63) 한-미 FTA 부속서 2-나, 부록1 참조,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or/06-TRQ_Appendix_KOR.pdf, 검색일자: 2019. 7. 25.

〈표 IV-3〉의 계속

	HSK (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4	0404-10-1019	유장 분말 (식용)	0	3,377	0	3,478	0	3,582
	0404-10-1099							
	0404-10-2119		11.1		8.8		6.6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5	0405-10-0000	버터	0	225	0	232	0	239
	0405-90-0000		44.5		35.6		26.7	
6	0406-10-1010	치즈류	0	7,879	0	8,115	0	8,358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24		21.6		19.2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7	0409-00-0000	천연꿀	0	225	0	232	0	239
			243		243		243	
8	0701-90-0000	식용감자 (신선)	0	3,337	0	3,474	0	3,578
			304		304		304	
9	0805-10-0000	오렌지	0 ¹	2,814	0 ⁴	2,898	0 ⁷	2,985
			10 ²		5 ⁵		0 ⁸	
			50 ³		50 ⁶		50 ⁹	
10	1003-10-2000	보리	0	2,706	194.4	2,760	0	2,815
	1003-10-3000							
	1003-90-2000		216				172.8	
	1003-90-3000							
11	1003-10-1000	맥주맥· 맥아	0	9,742	0	9,937	0	10,135
	1003-90-1000		342		161.4 (1107. 10.0000)		273.6	
	1107-10-0000							

〈표 IV-3〉의 계속

	HSK (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12	1108-12-1000	옥수수 전분	0	11,255	0	11,593	0	11,941
	1108-12-9000		150.6		135.6		120.5	
13	1201-10-1000	식용 대두 * IP대두	0	26,523	0	27,319	0	28,139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487		487		487			
14	1211-20-1110	인삼 (수삼, 백삼)	0	6.4	0	6.6	0	6.8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160.9		148.5		136.1			
15	1214-90-9090	사료용 식물	0	200,000		200,000	0	200,000
			67		60.3		53.6	
16	1901-10-1010	조제 분유 (유아용)	0	788	0	811	0	836
	1901-10-1090		18		14.4		10.8	
17	2309-90-2010	보조 사료	0	6,190	0	6,376	0	6,567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29.5		25.3		21	
18	3505-10-4010	변성 전분 (텍스트린)	0	15,757	0	16,230	0	16,717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24.9		192.8		160.7	

- 주: 1.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14메트릭
톤 이하의 물품)
2.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14메트릭
톤을 초과하는 물품)
3. 오렌지(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4.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98메트릭
톤 이하의 물품에 한한다)
5. 오렌지(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표 IV-3〉의 계속

HSK (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6.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98메트릭 톤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985톤 이하의 물품에 한한다)

8. 오렌지(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9.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985톤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한다)

자료: 한-미 FTA 협정문 및 Ciel HS 관세율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clhs.co.kr/Y2016/answer.asp?strHS=0402101010&ss=Y2016/redirect.asp>, 검색일자: 2019. 7. 25.

나. 한-EU FTA TRQ 운영 현황

-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 이후 12개 품목에 대해 FTA TRQ가 적용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2호(2016.12.21))에 근거함
 - 협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민감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Tariff Rate Quota),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이행하기로 함⁶⁴⁾
- FTA TRQ의 품목(12) 중 치즈류, 조제분유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이 시장접근물량 품목과 중복됨
 - FTA TRQ 품목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유장분말, 버터, 치즈류, 천연꿀, 오렌지, 맥주맥·맥아, 조제분유, 보조사료, 변성전분으로 총 12개임

64)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173호(2016. 12. 21))에 의거함

- 오렌지를 제외한 11개 품목의 FTA TRQ 물량이 매년 증가하도록 협약됨⁶⁵⁾
- 오렌지는 최근 3년간 FTA TRQ가 40톤으로 동일함
- 한-미 FTA TRQ의 관리방식은 품목과 상관없이 선착순 방식이 원칙인 데 반해, 한-EU FTA TRQ의 관리방식은 품목별로 상이함
- 유장, 치즈, 조제분유, 보조사료, 맥주맥·맥아, 변성전분은 실수요자배정으로 한국유가공협회가 관리함
 - 보조사료, 맥주맥·맥아, 변성전분은 실수요자 배정으로, 보조사료는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관리하며 맥주맥과 변성전분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함
 - 탈·전지·연유, 천연꿀, 버터는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함
 - 탈·전지·연유, 천연꿀은 분기별 공매(3/6/9/12월)로 관리되며 관리주체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
 - 오렌지는 10년차까지 수입권공매, 11년차부터 수입실적기준배정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함

〈표 IV-4〉 한-EU FTA TRQ 품목 적용세율 및 증량 현황(2016~2018)

	HSK(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1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탈지 분유	0	1,125	0	1,159	0	1,194
			176		176		176	
			0		0		0	
			176		176		176	
2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전지 분유	0	1,125	0	1,159	0	1,194
			176		176		176	
			0		0		0	
			176		176		176	

65) 한-미 FTA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참조

〈표 IV-4〉의 계속

	HSK(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3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연유	0		0		0	
			89		89		89	
4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유장 분말 (식용)	0	3,770	0	3,883	0	4,000
			11.1 (상반기 13.3%)		8.8 (상반기 11.1%)		6.6 (상반기 8.8%)	
5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0	393	0	405	0	443
			40.4/48.5		32.3/40.4		24.2/32.3	
6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치즈류	0	5,132	0	5,286	0	5,444
			24		21.6		19.2	
7	0409-00-0000	천연꿀	0	56	0	57	0	59
			243		243		243	
8	0805-10-0000	오렌지	0 ¹	40	0 ⁴	40	0 ⁷	40
			15		5 ⁵		5	
			50 ³		50 ⁶		50 ⁹	
9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맥주맥· 맥아	0	12,772	0	13,155	0	13,549
			168.1/ 184.9		168.1/151.3 /240 (1107.10. 0000)		134.5/ 151.3	

〈표 IV-4〉의 계속

	HSK(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10	1901-10-1010 1901-10-1090	조제 분유 (유아용)	0	506	0	521	0	537
			18		14.4		10.8	
11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보조 사료	0	6,190	0	6,376	0	6,567
			27.2/31.1		23.2/27.2		19.4/23.3	
12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변성 전분 (텍스트 린)	0	36,050	0	37,131	0	38,245
			237.3/334		178/207.6		148.3	

- 주: 1.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14메트릭 톤 이하의 물품)
 2.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14메트릭 톤을 초과하는 물품)
 3. 오렌지(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4.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98메트릭 톤 이하의 물품에 한한다)
 5. 오렌지(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6.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898메트릭 톤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985톤 이하의 물품에 한한다)
 8. 오렌지(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
 9. 오렌지(1월 1일부터 2월 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2,985톤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한다)

자료: 한-EU FTA 협정문 및 Ciel HS 관세율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clhs.co.kr/Y2016/answer.asp?strHS=0402101010&ss=Y2016/redirect.asp>, 검색일자: 2019. 7. 26.

다. 한-중 FTA TRQ 운영 현황

- 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6개 품목에 TRQ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되었으며, 대두, 맥아, 고구마전분, 팥 기타, 기타사료, 참깨 등 총6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여 조건부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⁶⁶⁾
 - 해당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임

- 한-중 FTA TRQ의 특징은 TRQ 물량을 증량하지 않고 협정상 고정된 물량을 이행연차에 상관없이 양허한다는 점임
 - 한-미, 한EU가 FTA TRQ 물량을 증량하여 일정이행연도가 지나면 무한 증량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한중 FTA TRQ는 증량 없이 물량을 고정시킴

- TRQ 품목 중 설정물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기타사료이며, 설정물량이 가장 적은 품목은 팥임
 - 대두(콩나물용, 기타)의 현행관세는 487%이며, TRQ 물량은 10,000톤임
 - 맥아(볶지 않은 것)의 현행관세는 269%이며, TRQ 물량은 5,000톤임
 - 고구마전분의 현행관세는 241.2%이며, TRQ 물량은 5,000톤임
 - 팥의 현행관세는 420.8%이며, TRQ 물량은 3,000톤임
 - 기타사료의 현행관세는 46.4%이며, TRQ 물량은 38,000톤임
 - 참깨의 현행관세는 630%이며, TRQ 물량은 24,000톤임

- FTA TRQ의 품목(6) 중 3개 품목이 WTO TRQ 품목과 중복됨
 - WTO TRQ와 중복되는 FTA TRQ 품목은 팥, 고구마전분, 참깨임

66) 「대한민국과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6호(16.12.21))

〈표 IV-5〉 한-중국 FTA TRQ 품목 적용세율 및 증량 현황(2016~2018)

	HSK(10단위)	품목	2016		2017		2018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추천/ 미추천관세율 (%)	FTA TRQ (톤)
1	0713-32-9000	팔	0	3,000	0	3,000	0	3,000
			420.8		420.8			
2	1107-10-0000	맥아	0	5,000	0	5,000	0	5,000
			269		269			
3	1108-19-1000	고구마전분	0	5,000	0	5,000	0	5,000
			241.2		241.2			
4	1201-90-3000	대두 (콩나물용)	0	3,000	0	3,000	0	3,000
			487		487			
5	1201-90-9000	대두 (기타)	0	7,000	0	7,000	0	7,000
			487		487			
6	1207-40-0000	참깨	0	24,000	0	24,000	0	24,000
			630		630			
7	2308-00-9000	기타사료	0	38,000	0	38,000	0	38,000
			46.4		46.4			

자료: 한-중 FTA 협정문 및 Ciel HS 관세율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clhs.co.kr/Y2016/answer.asp?strHS=0402101010&ss=Y2016/redirect.asp>, 검색일자: 2019. 7. 26.

〈표 V-1〉의 계속

WTO 회원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브라질	2	2	2	2	2	2	2	2	2	2
캐나다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칠레	1	1	1	1	1	1	1	1	1	1
중국	7	7	7	7	7	7	7	7	7	7
콜롬비아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코스타리카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도미니카 공화국	8	8	8	8	8	8	8	8	8	8
에콰도르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엘살바도르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EU	113	113	113	113	113	120	120	120	124	124
과테말라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아이슬란드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인도	4	4	4	4	4	4	4	4	4	4
이스라엘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일본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카자흐스탄	2015 WTO 가입					3				
한국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멕시코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몰도바공화국	3	3	3	3	3	3	3	3	3	3
모로코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뉴질랜드	3	3	3	3	3	3	3	3	3	3
니카라과	9	9	9	9	9	9	9	9	9	9
노르웨이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파나마	19	19	19	19	19	19	18	18	18	18
필리핀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러시아연방 공화국	2012 WTO 가입		8		8		8		8	

〈표 V-1〉의 계속

WTO 회원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아프리카 공화국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스위스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대만	18	17	17	17	17	17	17	17	17	17
태국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마케도니아 공화국	1	1	1	1	1	1	1	1	1	1
튀니지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우크라이나	2008 1월 WTO 가입	1	1	1	1	1	1	1	1	1
미국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공화국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베트남	3	3	3	3	3	3	3	3	3	3
총TRQ 품목 수	1106	1106	1106	1106	1107	1114	1121	1121	1125	1128

자료: WTO, G/AG/W/18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18. 7. 31, p. 3.

- WTO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중에 있음
 - UR 협상 후 TRQ는 국제적으로 농산물 수입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관련 규율이 정해지지 않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2015년 기준으로 TRQ가 적용되는 총 1,125개 품목 중 단일관세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이 전체의 약 35%, 총 395개 품목이므로 실질적인 TRQ 대상 관리 품목은 730개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시장지향성이 높은 편이라고 알려진 단일관세, 수입허가, 선착순, 공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총 67%로 높은 편이며 비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 알려진 과거수입실적배분,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혼합방식 등은 전체의 총 11.9%로 낮은 편임
- 단일관세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을 제외한 730가지 품목 기준으로 수입허가방식이 총 243개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공매 방식이 79개, 과거 수입 실적 72개, 혼합방식 53개 품목의 순서로 적용되고 있었음
 - 수입허가 방식의 경우 TRQ 적용품목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매방식이 전체의 7%,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방식이 전체의 6%, 혼합방식이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2013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단일관세에 따른 관리방식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단일관세에 의한 관리방식은 2007년 530개 품목, 전체의 48%에 적용되었으나 2015년에는 395개 품목, 전체의 35%에 적용되며 적용품목과 전체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단일관세에 의한 관리방식이 전체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수입허가 방식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품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총 223개 품목 전체 20%에 적용되었으나 2015년에는 총 243개 품목 전체의 22%에 수입허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음
- 선착순,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공매에 따른 TRQ 관리 적용품목은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선착순 방식은 2007년 총 43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총 36개 품목, TRQ 적용품목 전체의 3%에만 적용되고 있었음

- 공매에 의한 방식의 적용품목 수는 2007년 89개 품목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었으며 TRQ 적용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로 감소된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음
- 국영무역 방식은 2007년 총 19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나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총 6개 품목에 적용되었음
 - 국영무역 방식이 TRQ 적용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2%에서 2015년 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과거수입실적에 따른 관리방식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69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나 2013년 다시 증가하여 77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7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적용품목의 증감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큰 차이가 없었음
- 생산자 단체 방식의 적용품목 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8개 품목이었으나 2014년 반으로 감소하여 2015년까지 총 4개 품목, 전체의 0.4%에 적용되고 있었음
- 혼합방식이 적용된 품목은 2014년도에 총 60개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53개로 다시 감소하였으나 TRQ 적용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로 동일하였음

〈표 V-2〉 WTO에서 규정하는(통보된) 관리방식 현황

방식 구분	TRQ 적용품목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일 관세	530 (48)	519 (47)	475 (43)	475 (43)	485 (44)	486 (44)	476 (43)	474 (42)	395 (35)	266 (24)
선착순	43 (4)	43 (4)	43 (4)	43 (4)	43 (4)	42 (4)	36 (3)	36 (3)	36 (3)	3 (0.3)
수입 허가	210 (19)	221 (20)	224 (20)	226 (20)	227 (20)	231 (21)	223 (20)	236 (22)	243 (22)	170 (15)

〈표 V-2〉의 계속

방식 구분	TRQ 적용품목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매	89 (8)	88 (8)	88 (8)	88 (8)	81 (7)	81 (7)	80 (7)	80 (7)	79 (7)	51 (5)
과거 수입 실적	73 (7)	73 (7)	73 (7)	73 (7)	69 (6)	69 (6)	77 (7)	75 (7)	72 (6)	38 (4)
국영 무역	19 (2)	19 (2)	19 (2)	16 (1)	16 (1)	16 (1)	16 (1)	6 (0.5)	6 (0.5)	0 0
생산자 단체	8 (1)	8 (1)	8 (1)	8 (1)	8 (1)	8 (1)	8 (1)	4 (0.4)	4 (0.4)	0 0
혼합 방식	72 (7)	72 (7)	55 (5)	55 (5)	56 (5)	56 (5)	57 (5)	60 (5)	53 (5)	27 (2)
불특정 방식	1 (0.1)	1 (0.1)	1 (0.1)	1 (0.1)	1 (0.1)	2 (0.2)	2 (0.2)	1 (0.1)	1 (0.1)	1 (0.1)
기타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총쿼터 적용품목	1106	1106	1106	1106	1107	1114	1121	1121	1125	1128

주: 1. ()의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2016년 자료의 경우 미 통보 또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자료: WTO, G/AG/W/18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18. 7. 31, pp. 7~8.

□

□ WTO 회원국들은 TRQ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입할 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 부가조건은 다섯 가지임

○ 부가조건에는 ① 국내산 구매규정 ② 수입할당량 제한 ③ 수출증명 ④ 과거무역경험을 비롯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⑤ 수출증명 및 과거 무역경험의 다섯 가지가 있음

□ 전체 TRQ 대상 품목 중 부가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품목의 비중은 2013년 10%에서 감소하여 2014, 2015년에는 9%를 기록하였음

- 부가조건이 적용된 품목 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2년 115개 품목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총 98개 품목에 부가조건이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가조건은 과거무역경험으로 총 47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증명은 총 32개 품목으로 두 번째로 많이 적용되고 있었음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이 요구되어진 부가조건은 과거무역경험임
 - 국내산 구매 규정은 2013년까지 11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적용품목 수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1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음
 - 수출증명과 과거무역경험을 동시에 요구한 조건은 2012년까지 총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었으며 2013년부터 5개 품목으로 적용품목이 감소하였음

〈표 V-3〉 TRQ 물량 수입을 위한 부가조건의 요구 현황

부가조건	연도	TRQ 품목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산 구매 규정	11	11	11	11	11	11	11	10	10	8	
수입할당량 제한	2	2	2	2	2	2	2	2	2	2	
수출증명	28	28	28	28	28	35	35	35	32	29	
과거무역경험	57	57	57	60	60	60	53	53	47	29	
수출증명+ 과거무역경험	6	6	6	6	6	6	5	5	5	5	
부가조건이 적용된 쿼터 적용품목 수	106	106	105	108	108	115	107	106	98	74	
전체 쿼터 적용품목에서 부가조건이 적용된 품목의 비중(%)	10	10	9	10	10	10	10	9	9	7	

주: 2016년 자료의 경우 미 통보 또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자료: WTO, G/AG/W/18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18. 7. 31, p. 8 및 자료 일부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2. TRQ 수입이행률 현황

- TRQ 관리방식에 다른 시장접근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으로 계산되는 수입이행률(Quota fill rate)을 WTO 회원국이 통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TRQ 물량의 단순평균 수입이행률은 2007~2015년 평균 약 58% 수준임
 - 연도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은 2012년 59%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54%를 기록하였음
- 2007~2015년 단순 평균 수입이행률 기준으로 수입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을 비교해보면 기타 방법 75%, 과거 수입실적 68%, 혼합방식 64%, 생산자단체 63%, 국영무역 62%, 공매 61%, 수입허가 53%, 선착순 및 불특정방식 48%를 기록하였음
 - 기타 방식의 수입이행률을 제외하고 수입이행률이 가장 높은 방식은 과거 수입 실적이었으며 선착순 및 불특정방식의 수입이행률이 가장 낮았음
- 경제학적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시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TRQ의 경우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선착순, 공매 등)의 수입이행률이 비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등)보다 높아야 함⁶⁷⁾
- 그러나 이행률 통계에 따르면 수입관리방식에서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비시장지향적인 과거수입실적 배분방식 및 혼합방식의 수입이행률이 시장지향적인 선착순 및 공매방식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민감한 품목들의 경우 비시장 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인 국영무역이나 과거실적 배분 등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행률이 높은 결과가 발생하게 됨⁶⁸⁾

67) 임정빈,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p. 10.

68) 임정빈,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p. 10.

- WTO 회원국의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TRQ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민감품목과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수입하게 되는 품목의 경우 국내의 농업이 입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의 정부가 수입관리방식을 선택할 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표 V-4〉 TRQ 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 비교

(단위: %)

수입관리 방식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순 평균 수입 이행률 (2007~ 2015)
선착순		50	49	53	46	45	47	43	48	50	6	48
수입허가		58	59	57	53	53	53	49	48	47	48	53
공매		63	60	58	57	64	63	61	62	59	48	61
과거수입 실적		73	70	67	68	69	76	64	62	61	56	68
국영무역		60	60	57	72	71	74	60	50	50	0	62
생산자 단체		65	66	61	54	53	51	54	84	75	0	63
기타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혼합방식		64	61	65	61	62	67	63	63	69	67	64
불특정방식		0	58	0	57	100	47	42	82	49	43	48
연도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61	60	59	57	58	59	55	55	54	51	58

주: 2016년 자료의 경우 미통보 또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자료: WTO, G/AG/W/18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18. 7. 31, p. 10.

- WTO의 주요 회원국이 WTO에 통보한 2007~2015년 TRQ 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을 살펴보면 멕시코(100%), 호주(99.6%), 이스라엘(99.4%), 스위스(92.8%), 베트남(91.2%) 등의 순으로 수입이행률이 높았음

〈표 V-5〉의 계속

국가	방식	공매 (AU)	선착순 (FC)	과거 실적 (HI)	수입 허가 (LD)	혼합 방식 (MX)	미 통보 (NS)	기타 (OT)	생산자 단체 (PG)	국영 기업 (ST)	단순평균 수입 이행률
인도		-	-	-	-	-	-	-	-	3.7	3.7
이스라엘		-	-	100.0	97.7	100.0	-	100.0	-	-	99.4
일본		96.4	-	-	55.8	-	-	-	-	-	50.7
한국		46.0	-	82.4	41.6	73.4	-	-	15.1	92.3	60.6
말레이시아		-	-	-	39.0	-	-	-	-	-	39.0
멕시코		-	-	100.0	-	-	-	-	-	-	100.0
몰도바공화국		-	-	-	83.8	-	-	-	-	-	83.8
모로코		-	63.3	-	-	-	-	-	-	-	
니카라과		-	-	-	-	81.1	-	-	-	-	81.1
노르웨이		50.1	-	93.9	34.2	-	62.3	-	-	-	60.1
파나마		52.3	-	-	-	-	-	-	-	-	52.3
필리핀		-	-	45.1	-	-	-	-	-	100.0	73.0
남아프리카 공화국		-	-	83.6	50.4	-	-	-	-	-	67.2
스위스		87.3	-	100	85.9	96.1	-	-	-	-	92.8
대만		43.0	-	-	-	65.3	-	-	-	-	54.4
태국					37.6				82.1	0.9	40.1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31.2								31.2
튀니지				60.9							60.9
우크라이나					34.6						
미국			47.0			55.7					51.4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공화국						73.7					73.7
베트남					91.2						91.2

주: 0건으로 보고된 경우 0건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WTO, G/AG/W/18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18. 7. 31, p. 11; Annex A Table A.1: *Principal Administration Methods - Simple Average Fill Rates by Member*, 2007~2016의 일부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WTO 자료에 따르면 TRQ에 대한 관리방식 중 수입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영 무역방식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개 품목을 비롯하여 캐나다 1개 품목, 필리핀 1개 품목, 태국 3개 품목의 총 6가지 품목, 4개국에서 적용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총 211개 품목에 단일관세를 적용하여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품목에 단일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아이슬란드 66개 품목, 남아프리카공화국 29개 품목 순으로 단일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음
- 앞의 <표 V-2> WTO에서 규정하는(통보된) 관리방식 현황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적용되었던 수입허가방식의 경우 EU가 118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에 적용하고 있었으며 한국 32개 품목, 남아공 17개 품목 순으로 수입허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음
 - 태국 16개 품목, 스위스 15개 품목, 일본 14개 품목에 수입허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세 국가 모두 TRQ 관리방식 중 수입허가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
- 선착순방식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품목인 2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음
 - 캐나다 4개 품목, EU 2개 품목, 유고슬라비아공화국이 1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음
- 공매방식은 아이슬란드가 가장 많은 품목인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음
 - 파나마 18개 품목, 노르웨이 13개 품목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과거실적 방식의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품목인 15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음
 - 튀니지 13개 품목, 필리핀 11개 품목의 순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혼합방식은 미국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에 적용하고 있었음
 - 한국이 12개 품목, 코스타리카 및 스위스 8개 품목순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 기타 방식을 사용한다고 통보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이었으며 생산자단체에 의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통보한 국가는 캐나다와 태국이었음
- 이스라엘은 5개 품목, 일본은 2개 품목에 대해 기타 방식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태국은 4개 품목, 캐나다는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에 의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음

〈표 V-6〉 2015년 기준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별 품목 수

(단위: 개)

국가	방식	단일 관세 (AT)	공매 (AU)	선착순 (FC)	과거 실적 (HI)	수입 허가 (LD)	혼합 방식 (MX)	미통보 (NS)	기타 (OT)	생산자 단체 (PG)	국영 기업 (ST)
호주		1			1						
캐나다				4	5	6	4			2	1
칠레						1					
코스타리카		18					8				
EU				2	3	118					
과테말라		20				2					
아이슬란드		66	24								
이스라엘		2			1	3	1		5		
일본			4			14			2		
한국		4	3		15	32	12				1
말레이시아		8				11					
멕시코		10			1						
몰도바공화국						3					
모로코											
니카라과		7					2				
노르웨이		211	13		6	1		1			
파나마			18								
필리핀		2			11						1

〈표 V-6〉의 계속

국가 \ 방식	단일 관세 (AT)	공매 (AU)	선착순 (FC)	과거 실적 (HI)	수입 허가 (LD)	혼합 방식 (MX)	미통보 (NS)	기타 (OT)	생산자 단체 (PG)	국영 기업 (ST)
남아프리카 공화국	29			7	17					
스위스		4		1	15	8				
대만	1	12				4				
태국					16				4	3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1							
튀니지				13						
우크라이나					1					
미국	1		29			14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공화국										
베트남					3					

주 1. 2015년 TRQ 관리방식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진 국가들 위주로 작성하였음

2. 2016년의 경우 WTO에 보고된 국가의 수가 적어 기준년도를 2015년으로 정하였음

자료: WTO, G/AG/W/183; ATTACHMENT 1: Administration Methods, Notifies Quantities Of Imports, and fill rates excel file(2007~2016)로부터 정리하여 저자 작성

VI. 요약 및 결론

1. TRQ 관리 투명성 제고

- 우리나라의 TRQ 제도 개선방향은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TRQ 관리방식 타결방향 및 현재 도출된 합의내용에 맞추어 제시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WTO 규범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TRQ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UR 이행과정 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WTO 각료회의 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WTO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 159개 회원국이 모두 모여 타결된 협정인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의 TRQ 관리개선에 대한 각료결정에서는 TRQ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
 - TRQ 관련 정보 90일 전 공표, 30~60일 내에 신청 처리, 하나의 관리기관 지정, 경제적인 수량 배분, WTO 통보, 필요 이상의 행정부담 금지, 소진율 공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TRQ와 관련하여 특히 수입허가절차 협정문의 내용을 준용하나 수입허가절차에 적용되는 기간보다 더 엄격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본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TRQ 미소진 시 관리방식

변경의무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투명성 관리 제고에 대한 합의는 모든 나라가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WTO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가 예상되는 투명성 있는 정보 제공 의무 부과 및 TRQ 관리 규정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농업통상마찰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TRQ 추가적 부가요건 요구사항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WTO 통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

- 수출국들은 투명한 TRQ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TRQ 관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수입국가 또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수출국들은 국영무역이나 수입허가제의 경우 시장왜곡으로 인식하고 있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수입권 철폐 및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국영무역 방식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TRQ 수입권을 갖고, 해당 품목을 수입하므로 수입창구가 단일의 독점 수입권을 가지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쌀에만 국영무역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필리핀, 우리나라, 캐나다, 태국의 4개국에서만 적용하는 관리방식이므로 향후 수출국에서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음
 - 수입허가제의 경우 허가 발급 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용도제한이 있을 시 수출국에서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영무역 및 수입허가제와 같은 비시장적 수입관리방식을 시장지향적인 수

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소모로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TRQ 수입차익을 얻기 위해 과한 비용 지불로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특히 수입허가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표 V-4> TRQ 관리방식에 따른 수입이행률 비교표의 2015년도 수입허가방식의 이행률(47%) 및 2007~2015 단순평균 수입이행률(53%)보다 낮은 41.6%를 기록하고 있었음

□ 특히 TRQ가 적용되는 품목 중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향후 TRQ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됨

- 국내외 가격차가 적어 비교적 경쟁력이 있으며 농가소득의 비중이 낮아 수입차익을 징수할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시장지향적인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TRQ 관리에 효율적일 것임

3. 일부 품목의 TRQ 설정 및 증량 제외

□ 수입실적 및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은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수입추천이나 증량이 불필요했음⁶⁹⁾

- 조란, 잠종, 종묘, 감자, 조, 수수, 호밀, 인삼, 누에고치 등의 품목이 해당되며, 시장접근세율(저율관세 또는 추천세율)과 고율관세(미추천세율)로 구분할 의미가 없으며, 증량유인도 없음

□ 또한 동 품목은 시장접근세율 적용물량도 거의 없어 TRQ를 확대하거나 관리방식을 변경해도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69) TRQ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서진교(2004)는 국내생산이 미미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TRQ 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WTO TRQ 제도는 1995년부터 운영되어 2019년 기준 25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당시 정한 품목의 위상 및 필요성과 현재의 품목설정 필요성이 다를 수 있음
 - 우리나라 자체적인 관리필요성과 별도로, 국제사회에서 시장접근물량관리와 관련하여 WTO 협정에서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과정에서 3년 연속 65% 미만의 이행률을 보였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하지만 마늘과 같은 양념채소류는 우리나라 특성상 수요가 많아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수입실적이 미미하더라도 TRQ 관리가 필요해 보임
 - 2017년, 2018년은 국내 마늘 재배면적 확대로 국내생산량이 많았음⁷⁰⁾
 - 즉, 국내생산수준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좌우되는 품목은 수입이행률이 저조하더라도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 201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마늘이 고온과 가뭄영향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높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가수요를 대비해 TRQ를 증량했음⁷¹⁾
 - 한편 마늘은 유사(냉동 마늘) 및 대체품목(초산조세/건조마늘)이 낮은 세율로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품목에 대한 TRQ 관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보조사료는 국내생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국내농산물가격 안정이라는 TRQ 관리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품목임
 - 서진교(2004)에 따르면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성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TRQ 관리 필요성이 적다고 지적함⁷²⁾

70) 고추와 마늘은 재배면적의 변동과 기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생산량 변동폭이 큰 대표적인 양념채소류임. 서진교, 2004, p. 99.

71) <http://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bbsNo=77&key=110&nttNo=88963>

72) 서진교, 2004, p. 79.

4. WTO TRQ와 FTA TRQ의 상호보완성 고려

- 본문에서 보듯, WTO TRQ와 FTA TRQ는 중복되는 동일 품목에 대해 설정 물량,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며 향후 두 가지 방식의 TRQ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임정빈(2010)은 WTO TRQ와 FTA TRQ는 공통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적용하므로 관리대상 품목, 관리방식 등의 부문에서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함을 명시함⁷³⁾

- 품목별로 보면, 주요 3개국 FTA TRQ의 18개 품목이 WTO TRQ 품목과 중복됨
 - 한-미 FTA TRQ 18개 품목 중 15개 품목, 한-EU 12개 품목 중 10개 품목, 한-중 6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WTO TRQ 품목과 중복됨

- 대부분의 FTA TRQ는 쿼터 내에서는 무관세로, WTO TRQ보다 적용관세가 낮으므로 WTO TRQ와 중복되는 품목은 FTA TRQ를 적용할 유인이 더 큼
 - 통상적으로 WTO TRQ의 시장접근세율보다 FTA TRQ 세율이 낮음
 - FTA TRQ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FTA TRQ 적용을 더 선호함

- 따라서 향후 체결하는 FTA에서는 WTO TRQ와 중복되는 품목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함
 - FTA TRQ 적용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WTO TRQ의 관리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73) 임정빈, 『저율관세쿼터제도(TRQ) 전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GS&J 인스티튜트, 2010. 7, p. 3.

- 한편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중복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현행은 WTO TRQ와 FTA TRQ에서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품목별 관리방식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특히 국영무역방식은 FTA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순수하게 국영무역방식만 적용되는 것은 쌀 하나이나, 혼합방식상 국영무역방식으로 운영되는 품목은 메밀, 참깨, 인삼,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대두로 총 11개 품목임

- 품목의 중복과 상이한 관리방식은 향후 FTA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TRQ 제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리방식의 차이는 동일품목이 여러 방식에서 관리되는 결과를 초래해 전체적인 TRQ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⁷⁴⁾

- 따라서 TRQ 수입관리방식을 품목별로 통일하고, 효과적인 WTO 및 FTA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함
 - 앞으로 추진될 TRQ 제도개선은 WTO와 FTA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효율적인 대외협상 추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74) 임정빈, 2007, p. 45.

참고문헌

- 서진교,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2004. 7.
- 임송수,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제161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 pp. 9~11.
- 임정빈, 『우리나라 관세할당(TRQ)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2007.
- _____, 『저울관세쿼터제도(TRQ) 전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GS&J 인스티튜트, 2010. 7.
- _____,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4.
- 산업통상부,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2018.
- 기재부,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관세청책관실 산업관세과 보도자료, 2008. 3. 25.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 사업안내[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이해]」, 2004.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2019」, 2019.
- _____,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2004.
- _____,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3. 12.
- _____, 『WTO TRQ 이행률 현황 2015』, 2016. 12.
- WTO, G/AG/W/183,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18. 7. 31.
-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eu/doc/1/>
- 한-EU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

한-중 FTA 협정문, <http://www.fta.go.kr/cn/doc/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home/apko000000/index.action>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씨엘HS, www.clhs.co.kr

외교통상부, www.mofa.go.kr/

부록

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종 우	0102-21-1000	축우(번식용/젖소)	실수요자배정	한국종축개발협회
	0102-21-2000	축우(번식용/육우)		
	0102-21-9000	축우(번식용/기타)		
	0102-31-0000	버팔로(번식용)		
	0102-90-1000	기타(번식용)		
종 돈	0103-10-0000	돼지(번식용)	실수요자배정	한국종축개발협회
종 계	0105-11-1000	닭(갈루스도메스터쿠스 종의 것/185g 이하/번식용)	실수요자배정	대한양계협회
	0105-94-1000	닭(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기타/번식용)		
탈지분유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1.5% 이하)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1.5% 이하)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0403-90-1000	버터밀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전지분유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연 유	0402-91-1000	무당연유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0402-99-1000	가당연유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유 장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한국단미사료협회
	0404-10-1099	유장(기타)			
	0404-10-2111	변성유장(유당을 제거한 것/사료용)			
	0404-10-2119	변성유장(유당을 제거한 것/기타)			
	0404-10-2121	변성유장(무기질을 제거한 것/사료용)			
	0404-10-2129	변성유장(무기질을 제거한 것/기타)			
	0404-10-2131	변성유장(유장 농축단백질/사료용)			
	0404-10-2139	변성유장(유장 농축단백질/기타)			
	0404-10-2191	변성유장(기타/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사료용)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0404-10-2199	변성유장(기타/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0404-10-2910	변성유장(기타/사료용)		
	0404-10-2990	변성유장(기타)		
버 터	0405-10-0000	버터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0405-90-0000	기타		
조 란	0408-99-1000	조란(껍질 붙지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 닭(갈루스 도메스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실수요자배정	대한양계협회
천 연 꿀	0409-00-0000	천 연 꿀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꿀 분	0506-90-2000	꿀 분	실수요자배정	한국단미사료협회
잠 종	0511-99-9010	잠 종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사과나무 등 종묘	0602-20-1000	사과나무	실수요자배정	한국과수종묘협회
	0602-20-2000	배 나무		
	0602-20-3000	복숭야나무		
	0602-20-6000	귤 나무		
뽕 나무	0602-90-9030	뽕 나무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종자용 감자	0701-10-0000	감자(종자용)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감 자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양 파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712-20-0000	양파(건조)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마 늘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또는 냉장)	실수요자배정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수입권공매	
	0712-90-1000	마늘(건조)		
고 추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709-60-9000	기타 고추류	실수요자배정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수입권 공매	
	0904-21-0000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904-2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녹두·팥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실수요자배정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수입권공매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매 니 옥	0714-10-1000	매니옥(신선)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산업협회
	0714-10-2010	매니옥칩(건조)		
	0714-10-2090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0714-10-3000	매니옥(냉장)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매 니 옥 펠 리 트	0714-10-2020	매니옥펠리트(건조)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고 구 마	0714-20-1000	고구마(신선)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714-20-2000	고구마(건조)		
	0714-20-3000	고구마(냉장)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기타서류	0714-30-9000	얌(디오스코레이종/기타)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714-40-9000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0714-50-9000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0714-90-9090	기타		
밥	0802-41-0000	밥(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수입권공매	산림조합중앙회
	0802-42-0000	밥(탈각한 것/신선·건조)		
잣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실수요자배정	산림조합중앙회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오 렌 지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감 귤 류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이외/신선·건조)		
	0805-50-2020	라임(시트리스 라티폴리아)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후르츠 이외/신선·건조)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대 추	0810-90-3000	대추(신선)	실수요자배정	산림조합중앙회
	0813-40-2000	대추(건조)		
녹 차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이하로 내용물에 직접접하여 포장)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생 강	0910-11-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파쇄하지 않으면서 분쇄하지 않은 것)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0910-12-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파쇄 또는 분쇄한 것)		
	0910-11-2000	생강(건조/파쇄하지 않으면서 분쇄하지 않은 것)		
	0910-12-2000	생강(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0910-11-9000	생강(기타/파쇄하지 않으면서 분쇄하지 않은 것)		
	0910-12-9000	생강(기타/파쇄 또는 분쇄한 것)		
호 밀	1002-10-0000	호밀(종자용)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맥 주 맥	1003-10-1000	맥주맥(종자)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산업협회
	1003-90-1000	맥주맥(기타)		
보 리	1003-10-2000	겉보리(종자)	실수요자배정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단미사료협회
	1003-90-2000	겉보리(기타)		
	1003-10-3000	쌀 보 리(종자)		
	1003-90-3000	쌀보리(기타)		
	1003-10-9000	기타(종자)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1003-90-9000	기타(기타)		
	1102-90-1000	보리가루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103-20-3000	보리(펠리트)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귀 리	1004-10-0000	귀리(종자용)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종 자 용 옥 수 수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0712-90-2091	기타채소(단옥수수/종자용)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옥 수 수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실수요자배정	한국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콘협회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이외)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벼섯생산지연합회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104-23-0000	기타가공곡물(옥수수의 것)		
	1108-12-1000	옥수수전분(식품용)		
	1108-12-9000	옥수수전분(기타)		
	0712-90-2092	기타채소(스위트콘/기타)		
미 곡	1006-10-0000	벼	지정기관배정	농림축산식품부
	1006-20-1000	메 현 미		
	1006-20-2000	찰 현 미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1006-30-1000	맷 쌀		
	1006-30-2000	찰 쌀		
	1006-40-0000	쇄 미		
	1102-90-2000	쌀 가 루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103-20-2000	쌀(펠리트)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 이외)		
	1806-90-2999	기타조제식료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 이외)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수 수	1007-10-0000	수수(종자용)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메 밀	1008-10-0000	메 밀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008-40-0000	포니오(디지털리아종)	수입권공매	
	1008-50-000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1008-60-0000	라이밀		
	1008-90-0000	기타곡물		
조	1008-21-1000	조(종자용)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기타가공 곡 물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 보리가루 이외)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103-20-1000	밀(펠리트)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04-2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이외)		
감 자 분	1105-10-0000	감자(분과 조분)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맥 아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산업협회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밀전분등	1108-11-0000	밀 전 분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식품산업협회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 마 이외)		
	1108-20-0000	이 늘 린		
변성 전분등	1108-13-0000	감자전분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사료협회
	3505-10-3000	배소전분		
	3505-10-4010	프리젤라타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 (식품용)		
	3505-10-4090	프리젤라타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3505-10-50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3505-10-50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기타)		
	3505-10-9010	기타변성전분(식품용)		
	3505-10-9090	기타변성전분(기타)		
	3505-20-1000	전분글루		
	3505-20-2000	텍스트린글루		
	3505-20-9000	기타글루		
	매니옥 전분	1108-14-1000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고구마 전분	1108-19-1000	고구마전분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대 두	1201-90-1000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201-90-2000	사료용	수입권공매	한국대두가공협회
	1201-10-1000	콩나물용(종자)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1201-90-3000	콩나물용(기타)		한국사료협회
	1201-10-9000	기타(종자)		
	1201-90-9000	기타		
낙 화 생	1202-30-1000	미탈각(종자)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평콩생산유통가공협회
	1202-41-0000	미탈각(기타)	실수요자배정	
	1202-30-2000	탈각(종자, 파쇄여부 불문)		
	1202-42-0000	탈각(기타-파쇄여부 불문)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참 깨	1207-40-0000	참 깨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공매	
인 삼	1211-20-1110	산양삼(수삼)	지정기관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211-20-1190	기타(수삼)	수입권공매	
	1211-20-1211	백삼 분삼(산양삼의 것)		
	1211-20-1219	백삼 기타(산양삼의 것)		
	1211-20-1291	백삼 분삼(산양삼 이외의 것)		
	1211-20-1299	백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1211-20-1311	홍삼 분삼(산양삼의 것)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1211-20-1319	홍삼 기타(산양삼의 것)		
	1211-20-1391	홍삼 본삼(산양삼 이외의 것)		
	1211-20-1399	홍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1211-20-2210	홍 삼 분		
	1211-20-2220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홍삼타브렛, 홍삼캡슐 이외)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211-20-9200	인삼종자		
	1211-20-9900	기타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 이외)		
	1302-19-1210	홍삼엑스		
	1302-19-1220	홍삼엑스분		
	1302-19-1290	홍삼의 액즙과 엑스(홍삼엑스 및 홍삼엑스분 이외)		
	2106-90-3021	홍 삼 차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홍삼차 이외)		
	3301-90-4520	홍삼의 것		
사 료 용 근 채 류	1214-90-1000	사료용근채류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알팔파, 베일리외)		한국사료협회
	2308-00-9000	기타 사료용 식물성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박류 및 부산물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참기름과 분획물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 당	1702-11-1000 1702-19-1000	유 당 기타유당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기공협회
인 조 꿀	1702-90-1000	인 조 꿀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에틸알콜	2207-10-90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의 것으로서 조주정은 제외한다)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산업협회
육 분	2301-10-1000	육·설육의 분·조분·펠리트(비식용)	실수요자배정	한국단미사료협회
참깨유박	2306-90-1000	참깨유박	실수요자배정	한국사료협회
기타배합 사 료	2309-90-1091	기타배합사료(대용유의 것)	실수요자배정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을 주로 한 것)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 기타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향미제 이외 주원료) 기타 사료용조제품(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 제는 제외하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한한다)	실수요자배정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누에고치	5001-00-0000	누에고치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수출입조합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생 사	5002-00-1020	생사(백잡사/20테시텍스 초과 25.56테시텍스 이하)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수출입조합
	5002-00-1030	생사(백잡사/25.56테시텍스 초과 28.89테시텍스 이하)		
	5002-00-1040	생사(백잡사/28.89테시텍스 초과 36.67테시텍스 이하)		
	5002-00-1050	생사(백잡사/36.67테시텍스 초과)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577#AJAX>

부록 2.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1	진지분유	0402-21-1000	5,000	5,150	5,305	5,464	5,628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0402-21-9000																			
		0402-29-0000																			
2	유장분말 (식용)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3	버터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3,000	3,090	3,183	3,278	3,377	3,478	3,582	3,690	3,800	무제한									
4	치즈류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5	천연꿀	0405-10-0000	200	206	212	219	225	232	239	246	253	무제한									
		0405-90-0000																			
		0406-10-1010	7,000	7,210	7,426	7,649	7,879	8,115	8,358	8,609	8,867	9,133	9,407	9,690	9,980	10,280	무제한				
5	천연꿀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5	천연꿀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5	천연꿀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5	천연꿀	0409-00-0000	200	206	212	219	225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	식품감자 (신선)	0701-90-0000	3,000	3,090	3,183	3,278	3,377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7	오렌지	0805-10-0000	2,500	2,575	2,652	2,732	2,814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8	보리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1003-90-3000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2,815	2,872	2,929	2,988	3,047	3,108	3,171	3,234	무제한											
9	맥주맥·맥아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10,135	10,338	10,545	10,756	10,971	11,190	11,414	11,642	무제한											
10	옥수수전분	1108-12-1000 1108-12-9000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11,941	12,299	12,668	13,048	13,439	13,842	14,258	14,685	무제한											
11	식용대두 * IP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12	인삼(수삼, 백삼)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5.7	5.9	6.0	6.2	6.4	6.6	6.8	7.0	7.2	7.4	7.7	7.9	8.1	8.4	8.6	8.9	9.1	무제한								
13	사료용사물	1214-90-909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무제한										
14	조제분유 (유아용)	1901-10-1010 1901-10-1090	700	721	743	765	788	811	836	861	887	무제한																
15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5,500	5,665	5,835	6,010	6,190	6,376	6,567	6,764	6,967	7,176	7,392	무제한														
16	변성전분 (텍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14,000	14,420	14,853	15,298	15,757	16,230	16,717	17,218	17,735	18,267	18,815	무제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품 목	세 번	연차별 적용물량(톤, 2011. 7. 1. 잠정발효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1	0402-21-1000	1,000	1,000	1,030	1,060	1,092	1,125	1,159	1,194	1,229	1,266	1,304	1,343	1,384	1,425	1,468	1,512		이행 16년차 후, 쿼터물량은 16년차 물량과 동일	
	0402-21-9000																			
	0402-29-0000																			
연 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0404-10-1019																			
	0404-10-1099																			
2	0404-10-2119	3,350	3,350	3,450	3,554	3,660	3,770	3,883	4,000	4,120	4,243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0405-10-0000	350	350	360	371	382	393	405	417	430	443									
3	0405-90-0000																			
	0406-10-1010																			
4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4,560	4,560	4,696	4,837	4,982	5,132	5,286	5,444	5,608	5,776	5,949	6,128	6,312	6,501	6,696			무제한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5	0409-00-0000	50	50	51	53	54	56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이행 16년차 후, 쿼터물량은 16년차 물량과 동일

품 목	세 번	연차별 적용물량(톤, 2011. 7. 1. 잠정발효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	오렌지	0805-10-0000	20	20	20	20	2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이행 12년차 후, 워터물량은 12년차 물량과 동일
7	맥주맥맥아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10,000	10,000	10,800	11,600	12,400	12,772	13,155	13,549	13,956	14,375	14,806	15,250	15,707	16,179	16,664			무제한
8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450	450	463	477	491	506	521	537	553	570								무제한
9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5,500	5,500	5,665	5,834	6,009	6,190	6,376	6,567	6,764	6,967	7,176	7,391						무제한
10	텍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8,000	28,000	30,500	33,000	35,000	36,050	37,131	38,245	39,392	40,574	41,791	43,045						무제한

관세연구 19-01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
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발 행 2019년 10월 31일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982-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9-01

**관세할당물량(TRQ)
현황에 대한 연구:
WTO TRQ 및 FTA
TRQ를 중심으로**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